

인권 기록실		
일련번호	기간	비고
98 2/26	B1	6

문화정책연대 기획단 주관 2차 토론회

우리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표현의 자유와 영상문화의 다양성

일시 : 1997년 11월 14일(금) 14시

장소 : 기독교회관(종로5가) 2층 대강당

주최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KNCC인권위,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국영화연구소, 한국민족음악인협회,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서울문화이론연구소,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비상대책위원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 석방 공대위,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대위

주관 : 문화정책연대 기획단, 인권영화제, 퀴어영화제,
 전국씨네마떼끄연합, 독립영화협의회

10월 24일

11월 24일

12월 24일

4.3

이명박 → 박근혜

~~이명박~~

이명박 → 박근혜

박근혜 → 문재인

문재인 → 윤석열

→ 이인제

진행순서 및 자료집 차례

인사말씀

토론 사회 : 이충직(중앙대 영화학과 교수)

◇ 발제 1 : 인권,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검열 (김혜준 / 인권영화제 집행위원)

부록 1 :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문 (요약)

부록 2 : 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자료 (성명서)

◇ 발제 2 : 창조적 다양성을 가로막는 영화심의체계 : 심의방법과 심의기준에 대한 문제제기
(서동진 / 퀴어영화제 집행위원, 김혜준 / 인권영화제 집행위원)

◇ 부록 3 : 일본 영화윤리규정, 호주의 등급심의 기준

◇ 토론 : 고갑희(여성문화이론연구소 소장)

조희문(상명대 교수/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심의위원)

이명숙(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청소년보호위원회)

이형근(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YMCA 1인 - 이철희

우리만화연대모임 1인

2021

2021년 1월 15일
 ①. 인권의 범위, 가치
 ②. 인권이란 무엇인가?
 ③. 인권이란 무엇인가?
 ④.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검열

(김혜준 : 인권영화제 집행위원)

머리말

일반적으로 예술표현의 사회적 책임을 말할 때 전제가 되는 것은 예술표현의 문제점 혹은 유해성이다. 그러나 이는 소극적인 해석이며 예술표현이 담당해야 할 마땅한 역할에 대해서는 소홀히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적극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살펴보면 예술표현의 자유(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회적인 책임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다. 예술은 현실과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예술이란 삶의 반영이며 그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한다. 특히 예술의 자유를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말하는 것은 예술이 주류로부터 소외되었거나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다양한 사상·의견의 자유로운 표현과 교환이 가능해야 민주정치체제의 기능이 유지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영화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이런 판단과는 거리가 멀다. 인권영화제를 주도하고 4·3사건을 다룬 비디오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를 상영하였다는 이유로 인권운동가 서준식이 진급 구속된 사건은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인데 인권·영화·언론·국가·정부·법·검열 등이 그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영화를 비롯한 예술 표현물에 대한 심의제도가 존재한다. 그것의 영향력이 대단히 직접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술 작품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그것이 야기할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에 대한 상반된 견해의 폭을 좁히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영상물은 그것의 재현능력과 생생한 현실감 때문에 자유와 규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항상 중심에 있어 왔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비과학적이며 일관성 없는 규제제도는 심의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만큼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것도 사실이다. 일례로 1919년의 연쇄극 <의리적 구투> 제작을 기점으로 하는 한국영화사는 검열에 의해 누더기가 되었다고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일제가 만든 검열방식과 그 근거규정으로서의 영화관련법은 미군정하에서나 정부수립후에나 심지어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에도 여전히 그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해오면서 영화의 현실 반영성을 침해해왔다. 이 글은 인간의 기본권이라 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행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당연히 언론·출판의 자유와 영상표현물 혹은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인권과 표현의 자유¹⁾

문자 그대로 인간의 권리를 말하는 '인권'의 내면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당연한 권리, 모든 인간이 남녀·빈부·귀천의 구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고유권을 의미한다. 미국(버지니아 권리장전과 독립선언)에서는 인권을 생래적·천부적 권리로 보는 반면 프랑스(인권선언)에서는 자연권적 권리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천부적 생래적 권리사상이 "국가성립 이전의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생명·자유·재산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에게 고유한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권의 보장을 위하여 인간 상호간에 체결된 계약이 사회계약이다"는 존 로크(John Locke)의 자연법 사상²⁾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권'이라고 하여 국가에 따라 기본권 또는 기본적 인권으로 쓰이기도 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제10조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천부적·자연권적 인권과 기본권적 인권의 관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권영성³⁾은 "인간의 권리와 함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되는 천부적인 권리 또는 자연권을 말한다.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제 권리를 뜻한다. 그리고 기본권 중에는 생래적인 인권뿐만 아니라 국법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었거나 구체화되었다고 생각되는 기본권(참정권), 청구적인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이 있다. 그런 까닭에 기본권의 내용과 인권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 김철수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⁴⁾ 각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인권사상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려 하는 것이므로 대체로 말한다면 기본권은 인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인권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면 결국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행 헌법⁵⁾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인권을 행복추구권(제10조)을 비롯 평등권(제11조), 신체의 자유(제12조), 형사불소급·일사부재리의 원칙(제13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사생활의 자유(제17조), 통신의 자유(제18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재산권의 보장(제23조), 선거권(제24조), 공무원담임권(제25조), 문서청원권(제26조), 재판청구권(제27조),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근로자의 단결권(제33조), 사회보장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이와 관련하여는 김철수, 제9권정신판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1997.; 한병구, 『언론과 윤리법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을 주로 참조
2. Two Treatises on Civil Government; 김철수 앞의 책 235쪽에서 재인용
3.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1981, 222쪽.
4. 김철수, 앞의 책, 236쪽.
5. 김철수는 기본권을 1)좁은 의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평등권, 3)자유권적 기본권, 4)생존권적 기본권, 4)청구권적 기본권, 5)참정권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중 '자유권적 기본권'은 다시 신체의 자유, 사회적·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 정치적 자유로 나뉘며, '정신적 자유권' 안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가 포함된다. 김철수, 앞의 책, 250-257쪽.

국제적 차원에서 처음 채택된 권리선언인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제1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생래적으로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제19조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거나 또는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정보와 사상을 탐구·입수·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엔의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은 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A규약, 31개 조항), ②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B규약, 53개 조항), ③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14개 조항)로 되어 있다. 언론관련조항은 B규약, 즉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19조 1항은 "모든 인간은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갖도록" 하였고 2항에서는 "모든 인간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국경을 넘는 여부와 관계없이 구두·서면이나 인쇄물·예술품의 형식 또는 자기가 선택한 기타 방법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고 전달할 자유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항에서는 "전항(前項)에 규정한 권리의 행사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이지는 않은 제한적인 자유임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는 헌법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많은 국가에서는 경우에 따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함께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라고 한다. 구서독의 헌법처럼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라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라고 해서 언론과 출판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freedom of the speech and the press)를 분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역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언론과 출판은 구별된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듯이 '언론'은 TV, 방송, 영화, 연극은 물론 기타 모든 구두적 표현행위를 말하며, '출판'은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출판물은 물론 문자, 그림, 상형 등과 같은 상징적 표현행위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자기의 의견, 사상, 신조 등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발표하고 또한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구병삭은 언론의 자유를 인간 내면의 자유가 구체적인 행위로서 표현된 외면적 정신활동의 자유라고 본다.⁶⁾ 어쨌거나 언론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 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제1의 자유(the first freedom), 고차원적 자유(the exalted freedom), 또는 우월적 자유(superior 또는 preferred freedom)라고도 한다.⁷⁾

현대적 언론자유 개념

1787년 제정된 본래의 미국 연방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권리와 같은 권리장전 조항은 명시되지 않

6. 구병삭, 『신헌법원론』, 서울: 박영사, 1988., 413쪽.
7. 한병구, 앞의 책, 16쪽.

있다. 연방정부는 헌법 자체의 구성논리로서 인민으로부터 위탁된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연방헌법에도 권리장전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1791년 최초의 수정이 이뤄졌다. 첫번째 수정헌법 10개 조항을 연방헌법의 권리장전 조항이라고 한다. 이 10개 조항 중 제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명시된 관계로 일반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로 통용된다. 미국의 연방헌법은 본래의 제정헌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면 수정을 가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의 조문은 이렇다.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교(信敎)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여하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⁸⁾ 이 조항의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가 나타났다. 절대적인 언론자유주의자들은 수정헌법 제1조를 무조건적·무제한적인 절대적 자유로 해석했다. 반대론자들은 제1조의 참뜻은 조건적·제한적 자유를 의미한다고 했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지 ‘행위’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868년 미국 연방의회는 수정헌법 제14조를 채택했는데 ‘정당한 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without due process of law)’ 시민의 생명, 자유와 재산을 박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적절하고 정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보장되는 자유’로 해석한 것이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언론의 자유를 무제한적·절대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면서 종래의 언론자유개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고 고전적인 자유이념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종래의 개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현실감각에 맞게 수정 발전시킨 것이 현대적 언론자유개념이다. 현대적 언론자유개념의 핵심 역시 ‘자유’이다. 다만 ‘적절하고 정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가 필요한 것은 자유에 대한 견해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언론이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 문란 등 사회복지의 실현에 모순되는 반사회적 행위, 시민적 자유의 보장에 모순되는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를 상정해 보면 그렇다. 이 경우 언론의 자유는 다른 이익과 상충되기 마련이고 이때 공평한 결정이 요구되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역시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권영성은 언론의 현대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⁹⁾ ① 개개인이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그 존재가치가 있다. ② 인간의 내면적 작용을 의미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양심과 사상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 타인으로부터 비판받아 자기의 사상을 발전시킬 수도 없다. ③ 민주정치체제의 기능은 정치적 사상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하다. 그런 정치적 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자유로운 사상전달의 수단과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④ 언론의 자유는 각자의 인격형성을 위한 비유에 그치지 않고 민주정치체제의 기능화를 위한 불가결의 전제가 된다.

8.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9. 권영성, 앞의 책, 379쪽.

언론자유와 법익보호 및 법적규제

언론의 자유는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이다. 언론자유가 여타의 자유와 비교해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뜻이지 결코 절대적이며 특권적 지위가 부여된 자유는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존중’을 명시하였고, 제21조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상에 입장이 다른 두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언론자유라는 인권과 개인존중이라는 인권은 서로 끝없이 충돌하는 모순 관계임을 말해 준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될 수 없으며 명예훼손 등과 같은 인권문제와 모순 관계에 있다. 언론자유도 기본적으로는 인권에 속하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때로는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언론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양자가 대립적인 관계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 현행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익 또는 법률적 이익이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활이익과 가치를 말한다. 보호법익은 국민이 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 예컨대 언론자유와 소중함만을 강조하여 그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생활이익이 위협을 받게 될 터인데 이런 이유에서 각 국가는 법률로서 언론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언론자유와 보호법익은 그 주체에 따라 국가적·사회적 보호법익, 개인적 보호법익으로 나뉜다.

1. 국가적 보호법익

1) 형법상 ‘내란의 죄’¹⁰⁾

‘내란의 죄’(제87조·91조)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 중에서 언론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규라 할 수 있다. 형법 제91조 1항과 2항은 국헌문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90조 2항은 “제87조 또는 81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언론에 내란죄가 적용된 예는 거의 없다.

2) 국가보안법¹¹⁾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 “헌법상의 통일 조항으로 인해 이미 사문화된 것(위헌성)이나 다름없으면서도 정부권력에 반대되는 세력의 탄압에만 이용되면서 위험한 탄압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1조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언론 혹은 영상 표현물과 관련된 조항으로는 국가기밀누설 등 반국가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유포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자에 대한 처벌(제4조 1항 6호),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에 대한 처벌(제7조 1항), 또는 반국가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또는 문서, 도서, 기타

10. 유기천, 『형법학』, 서울: 일조각, 1983, 12쪽.
11. 이에 대해서는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1-3』, 서울: 역사비평사, 1989-1992을 주로 참조하였다.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제7조 5항) 등이 있다.

국가의 안전이 국민 각자의 생존의 밑바탕이 되며,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감수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불가피성의 원칙),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고(최소한의 원칙), 제한되는 기본권과 제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상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이익형량의 원칙),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제한의 기준도 달라야 한다(이중기준의 원칙)는 것이 기본권 제한의 법률이 갖춰야 할 요건(헌법 제37조)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이 모든 요건중 어느 하나도 갖추지 않고 있다. 형법등과의 중복성 때문에 불가피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법의 규정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형사처벌법규에서 규제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제7조의 찬양·고무·동조죄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학문·예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내용이다. 인권영화제와 관련한 서준식 대표의 구속과 또다른 제주 4·3관련 다큐멘터리 <잠들지 않는 함성 제주4·3>(96년/56분/김동만 연출)에 대한 기소방침 등에서 보여지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다. 우리 사회 내부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이라는 기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고 어떤 적극적인 기준에 따라 행위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다는 소극적인 이유 때문에 불법성이 판단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주체적 기준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모색하면 되는 것을 모두 외부적 기준을 들어 막음으로써 자율적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또 설사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동조의 표현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반박은 자유로운 토론과 검증을 통해 하면 되는 것이지 형벌에 의한 것이 되어서는 적절치 않다.

3) 형법상 '국교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 죄'는 언론과 관련하여 ① 제107조 2항 '외국 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② 제108조 2항의 '외교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있다.

2 사회적 보호법의

사회적 보호법이라 함은 사회질서유지의 보호를 목적으로 법률이 요구하는 사회규범에 의해 언론이 규제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병구는 영화법(영화진흥법)을 음란표현물 관련법률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¹²⁾

3. 개인적 보호법의 : 인격권과 명예훼손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이 자유를 방자하여 타인의 명예나 권리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자유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유기천은 "자유사회의 기본이념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은 무궁한 가치를 갖는 것이므로 전체주의 사회에서와 같이 1더하기 1

12. 한병구, 앞의 책, 167쪽.

는 2라는 계산방법, 즉 두 사람의 가치는 한 사람의 가치보다 반드시 크다는 계산방법은 승인할 수 없으며, 비록 한 개인의 가치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지대한 가치가 있음을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적 보호법익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임을 알아야 한다"¹³⁾고 했다.

인격권은 인권 중 일부의 권리, 즉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과 같이 인격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이익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명예'는 인간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지위 또는 가치를 말한다. 이 가치는 윤리적 가치뿐만 아니라 학문적·예술적·사교적 가치, 나아가 건강·용모 등의 모든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다. 인간에게는 정신적 존재로서의 명예가 있고 이는 사회적으로 일정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평가는 그 사람이 사회적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법은 명예훼손죄라는 규정을 두고 이러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명예훼손의 성립조건으로 ① 공연성(제307조 1,2항), ② 사실의 적시(제307조 1항), ③ 허위사실의 적시(제307조 2항, 제308조), ④ 비방할 목적(제309조)을 들고 있다. 공연성에 대해 형법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연성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의 적시라 함은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타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진실된 사실을 지적 또는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의 조화

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사조를 살펴보자. 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법사조란 양자를 조화 있게 형량(衡量)해야 한다는 법사조를 말한다. 여기서의 공공복리란 국가이익, 사회질서 유지, 공중도덕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사조는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목표 중의 하나가 공공복리의 실현에 있다고 할 때, 언론자유를 내세워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공공복리의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서 있다. 절대적 언론자유라는 기본권 향유는 기본적으로 공공복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를 조화시키려는 법사조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이론으로는 ① 사전억제 금지의 이론, ② 위험한 경향의 이론, ③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의 이론, ④ 이익교량의 이론 등이 있다.¹⁴⁾

1. 사전억제 금지의 이론

사전억제 금지의 이론(prior restraint theory)은 표현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취해지는 정부의 기사내용에 대한 검열, 허가 및 금지 조치 등을 의미한다. 이 이론은 18세기 후반에 William Blackstone에 의해 제창되었다. Blackstone은 "언론·출판이 사전 허가나 제한으로부터는 해방되는 것이지만 사후적인 검열에 의한 처벌에 대해서는 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발표되기 전에는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13. 유기천, 앞의 책, 21쪽.

14. 김철수, 앞의 책, 532-537쪽.

없으나 발표된 후에 어떠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때에는 그 죄를 감수해야 한다는 이론이다.¹⁵⁾

2. 위험한 경향의 원칙

‘위험한 경향의 원칙(the dangerous tendency rule)’은 언론을 합법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대조를 이룬다. 이 원칙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해석하는 판례이론 중 가장 적극적으로 언론자유를 제약하려는 이론이다. 이 원칙은 본질적 해악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입법부가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원칙은 1951년 이후 폐기되었다.

3.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clear and present danger rule)’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한계를 두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법률이 방지하려고 하는 해악이 발생할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 그 언론은 제한되나, 그렇다고 그와 같은 우려가 단순히 장래에 있을 것이라고 하여 제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나치게 방임적인 언론의 자유보다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 실정법 또는 특별법 등을 적용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법사조에 근거하고 있다.

4. 비교형량의 원칙 혹은 이익교량의 원칙

‘이해관계 균형의 이론’이라고도 하는 이 원칙(사건마다 다른 利益衡量 ; ad hoc balancing test)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이익과 그것을 제약하는 데서 얻어지는 이익 양자를 따져서 더욱 큰 이익이 있는 쪽에 우선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언론자유가 절대성을 부정하고 언론의 자유도 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가치로만 인정하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할 때 표현의 자유를 넓게 적용하려 하고 있다. 판례를 인용하면 “...사실의 적시에 의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그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인격권 보다 현저히 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는 원심의 판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大判 1996. 6. 28)¹⁶⁾

영화심의에 대한 논의

1. 영화심의의 목적

헌법 제21조 4항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또다른 책임으로서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있다.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구체적 행위로서는 음란물의 제작과 판매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그것을 듣거나 보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 효과 다시 말해 폭력이나 성범죄 증대라는 직접적·구체적 병폐를 수반하는 표현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일정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국가에 따라 있고 있는 규제장치의 근본취지에는 차이가 있다. 영화의 사회적 영향력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부터 영화관객을 보호하려는 의도까지 다양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영화에 대한 규제의 강도는 대체로 완화되는 추세이다.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창작표현의 자유 확보, 영화관객(특히 청소년)의 보호, 영화업계의 경제적 권익 보장이라는 삼자를 조화시키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을 등급분류라는 방법으로 해내고 있다.

검열과 심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예방적인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¹⁷⁾ 반면 심의는 “사회윤리, 도덕의 확보와 청소년 관객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율적·권고적인 규제조치를 말한다. 이런 명백한 차이를 감안할 때, 현행 심의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예술의 자유(헌법 제21조와 제22조)를 침해하는 명백한 검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2. 영상물 규제 관련 법적 장치

우리나라는 헌법상에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 및 특별법과 시행령 그리고 언론기관의 자율규정에서 음란물 또는 성표현물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1) 헌법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제한도 두고 있다.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형법

현행 형법은 제22장 ‘풍속을 해하는 죄’ 가운데 제243조, 244조를 두어 성표현물을 금지하고 있다. ‘풍

15. ‘영화진흥법’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사전심의제도는 위헌이라는 판결(헌재 1996. 10. 4 선고)의 판단근거. 다만 납본제도는 사전검열이라 할 수 없어 합헌이라 판단함(헌재 1992. 6. 26 선고).

16) 김철수, 앞의 책, 536-537쪽 발췌인용.

17. 김철수, 앞의 책, 557쪽.

속을 해하는 죄'란 성도덕 또는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성생활에 관계된 범죄를 말한다. ◇ 음화 등의 반포죄 : 제243조(음화 등의 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화 등의 제조죄 : 제244조 [음화 등의 제조 등] 전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의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은 196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그 후 두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미성년자의 흡연·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울러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을 선도육성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제1조).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 2(불량민화 등의 판매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폭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민화(이하 "불량민화"라 한다)를 미성년자에게 반포·판매·증여·대여하거나, 관람시키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이에 공할 목적으로 불량민화를 소지·제작·수입·수출하는 행위

2.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문서 도서 음반류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증여·대여하거나, 관람시키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이에 공할 목적으로 이들을 소지·제작·수입·수출하는 행위이다.

미성년자보호법 제6조 2(벌칙) 영리 목적으로 제2조의 2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청소년보호법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악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규제하고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규제대상이 되는 매체물은 다음과 같다.

제7조(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음반 및 비디오물
2.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유기 기구기관
3. 공연법 및 영상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중략)
6.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일간신문(정치·경제분야를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 산업, 과학, 시사, 종교분야를 제외한다)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 간행물

이외의 간행물 중 만화·시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8조에 의해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

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어 제9조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심의·결정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의 정도, 이용 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고 등급구분의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제10조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폭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악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5) 공연법

공연법은 공연을 그 목적에 맞게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전심의규정과 규제규정을 두고 있다. 공연법 제14조의 2에서는 공연물의 공연자가 공연을 하기 위하여는 문체부장관에게 각본 및 대본의 심의와 무용·음악·연주 등의 실연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16조(각본등의 심의) ① 공연자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각본 또는 대본(이하 "각본"이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본등 심의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각본을 심의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당해 부분의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 손상 우려가 있는 것
2. 적성국가를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4. 국민감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공연법은 공연물의 공정성과 그 질서 및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진협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의3(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① 공연의 공공성과 그 질서 및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진협(이하 "협의회"라 한다)을 설치한다.

④ 협의회는 공연활동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를 저해한 때에는 공연자·공연장경영자에게 공연의 금지 기타의 필요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헌법의 기본질서와 국가안전 및 공공질서의 유지
4.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
5. 가정생활의 순결
6.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

6) 다른 법률

이외의 법과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 ▷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 제5조 금지광고물
- ▷ 관세법 : 제146조 수출입의 금지(국헌 문란, 공안·풍속 저해 물품)
제179조 1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현행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검열인가 자율심의인가?

영화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된 끝에 1995년 12월 마침내 영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영화법의 문제 조항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였으므로 영화계는 제7차 영화법 개정에 불과하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영화진흥법은 그러나 시행된지 3개월여만에 사실상 사문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10월 4일에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의 조항 위헌판결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위헌판결 이후의 논란 끝에 1차 개정법이 1997년 3월 국회에서 확정된다. 등급분류 조항으로 인해 여전히 검열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 법은 1997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1차 개정 영화진흥법의 영화심의 관련 조항

제12조(상영등급의 부여) ①영화(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합격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할 수 없다"는 삭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부여할 수 있는 상영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 영화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된 등급만이 부여될 수 있다.

1. 모든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는 등급
2. 12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는 등급 (다만, 부모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자 동반시 관람가)
3. 15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는 등급
4. 18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는 등급

⑤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부여함에 있어 당해 영화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내용 검토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영등급의 부여를 보류할 수 있다.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적 외교질서,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⑥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 검토 결과, 그 해당하는 사항이 현저한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신청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영화상영의 제한) 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상영등급을 부여받지 아니한 영화

제18조의2(영화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영화업자 또는 공연장 경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시행령에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을 부여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의 비디오심의 관련 조항

제17조(심의) ①판매·배포·대여·시청제공 등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수입·반입추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론의 심의 받아야 함 (대통령령에서 예외 규정) ③심의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결과와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 판매·배포·대여·시청제공 또는 이 목적 진열·보관·상영 불가(시청등급 위반 포함)

제18조(심의기준) ① ...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저축내용) 1.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국가권의 또는 이의 손상 우려 2.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 문란 우려

제22조(판매·대여 금지처분) ① 수거·폐기 혹은 판매금지 처분, 게시물 부착, 기기·시설물 봉인등 조치

1. 등록 아니한 자가 제조한 비디오물
3. 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
- ② 수거증 교부

제25조(벌칙) ①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는 경우 3. 심의받지 않은 비디오물 판매·배포·대여·시청제공·진열·보관·상영 ② 몰수 3. 심의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그 제작에 쓴 기자재·인쇄물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상영등급분류)를 규정한 (1차 개정)영화진흥법 제12조 제5항, 제18조의 1호, 제35조 제1항의 4호는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된다. 물론 사전심의에 따른 세부사항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제12조 제7항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과 헌법 제75조·제95조에 위배된다.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규정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할 수 있다.¹⁸⁾ 다음에 언급되는 '영화'의 범주안에는 비디오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서술한다.

1. 영화는 언론에 포함되는가?

영화제작 자체는 예술의 자유에 속하나 제작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인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학설의 다수도 언론의 개념을 넓게 잡아 영화도 언론에 포함시키고 있다.

18. 비디오물 사전심의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김문현, 「비디오물의 사전심의의 위헌성 여부」, 『고시연구』, 1994년 7월호, 55-63쪽 참조.

김철수에 따르면 “언론은 구두에 의한 표현을, 출판이라 함은 문자 및 상형에 의한 표현을 말하는 것이지
 관, 일반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말하는 언론·출판이란 사상·양심 및 지식·경험 등을 표현하는
 모든 수단,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도서·사진·조각·서화·시
 가 기타 형상에 의한 것을 모두 의미한다”¹⁹⁾고 파악된다. 참고로 헌법재판소가 영화와 같이 상업성과 예
 술성을 동시에 갖춘 음반에 대해서 “음반의 제작, 보급활동은 헌법 제22조 1항과 헌법 제21조 제1항, 제2
 항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판정(1993년 5월 13일 선고)한 사례는 이를 명확히 반증하고 있다.

2.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상영등급부여)제도는 검열제도가 아닌가?

영화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심의제도는 그 문헌상 검열이라는 용어를 명시하지 않고 ‘상영등급부여’라고
 표현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검열로 보아야 한다. 제12조 제1항이 “상영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라고 규정
 하므로 의무적인 심의이고, 동조 제5항이 “상영등급을 부여함에 있어… 각호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영등급의 부여를 보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에서 “상영등급을 부여받지 아니한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영전에 행해지는 [사전심의]이고 아울러 ‘상영하지 못한다’는 금지규
 정이므로 [사전검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상영보류결정제도는 등급분류제도 자체의 특성과 결합하여 실질적으
 로 검열을 하는 결과를 형성할 가능성이 많은 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용을 인용하면 “...등급분류제도
 자체도 영화에 대한 사전적 제한조치이기 때문에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폐해가 많은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전적 제한조치로서의 등급분류제도에 더하여 등급결정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이 장
 치를 무기로 영화제작자 등의 ‘자진삭제’를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고, 실제로 그렇게 기능할 것이다.
 하지만 상영일정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영화에 대하여 보류결정을 무기로 하는 ‘삭제권유’를 영화제작자나
 상영자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이 점은 비영리영화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동일
 할 것이다), 거부할 수 없는 ‘권고’는 ‘강제’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²⁰⁾이 점은 설사 영화진흥법이 개정되면
 서 제정 영화진흥법 제12조 제2항의 “심의에 합격하지 못하는 영화는 이를 상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
 제되었다고 해도 판단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를 가지지 못한다.

3. 헌법 제21조 제2항(사전검열금지의 규정)에의 위배문제

현행 헌법하에서도 영화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는 확실이 있다.²¹⁾그러나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이 모
 든 언론에 대해 검열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제는 위헌이라 하겠다. 제3공
 화국헌법(제18조 제2항)처럼 영화에 대한 예외적 검열을 헌법 자체가 인정하고 있는 경우(“다만, 공중도덕

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극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가 아닌 현행 헌법하에서의 검열은 헌법
 위반이다. 한편 “언론·출판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21
 조 4항을 근거로 검열이 가능하다고 볼지 모르나 이 조항은 ‘사후억제’로서의 침해금지조로 보아야 하고 그
 래야만 헌법 제21조 제2항의 의미가 있다.

비록 예술의 자유인 창작 즉 영화제작의 자유 자체와 예술·창작행위의 산물을 표현하는 자유 즉 영화
 상영의 자유는 구분된다고 하나 예술의 자유인 영화제작의 자유도 그 발표를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인 영
 화상영의 자유가 전제되지 않고는 충분한 보장이 어렵다. 그런 이유로 가능한 한 영화상영에 대한 보장도
 해주어야 할 것이고 특히 정치적 표현의 기회를 박탈하는 영화검열은 금지됨이 마땅하다.²²⁾영화의 표현수
 단으로서의 특수성 곧 ‘여러 복사본을 많은 장소에서 동시 상영할 수 있고 관객에 대한 효과 또한 직접적
 이고도 자극적’이라는 이유도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전억제는
 사상이나 의견을 공중에 표현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막는다는 점에서 사후의 처벌보다 훨씬 강한 표현
 의 자유제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심의기준의 문제

다음으로 행정입법에 의한 심의기준의 문제(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인 헌법 제37조 제2항 및 포
 괄적 위임을 금지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위반)를 살필 차례다. 영화진흥법 제12조 제5항에서 상영등급
 부여를 보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애매하고 막연하다. 다시 말해 “이러저러
 한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심의에 있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심의기준에 사실
 상 거의 제한되지 않는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광범위하게 영화상영을 금지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영화를 통한 예술적 표현이나 사실 표현을 사전에 광범위하게 억제하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아니 우리의 현실에서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서가 아니라 명백히 표현을 광범위하게
 억제해 왔다. 영화계가 흔히 말하는, 이제까지 영화심의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 온 ‘자의적인
 판단 기준’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표현에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막연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법리를 인용하여 본다면, 현행의 심의기준은 광범위하
 게 영화상영을 금지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영화를 통한 예술적 표현이나 사실 표현을 사전에
 광범위하게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모호한 검열의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삭제제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 ‘연령별’등급제를 채택함이 옳다. 아울러 유해한 성적 표현물은 외국의 경우
 처럼 형법이 규정한 음화 등의 반포 및 제조죄(제243조 및 제244조)로 다루어 옳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영화가 상영되려면 반드시 문체부장관에 의해 위원이 임명되는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륜)의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으며, 심지어 공륜이 삭제권까지 갖는, 그래서 언론·출판에

19. 김철수, 앞의 책, 541-542쪽.

20. 김기중, 「영화진흥법 개정의 논점에 관한 몇가지 주장」, 『영화진흥법 개정 관련 공청회 진술요지』, 국회 문화체육공보
 위원회, 1997. 3. 11., 26쪽.

21. 문홍주, 구병석 등의 견해가 그러하든, 이에 대해서는 정재황,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의 위헌성 여부」, 『고시계』, 1991.
 11., 220쪽 참조

22. 정재황, 앞의 논문, 221쪽.

대한 검열(사상·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을 억제하는 제도)을 인정하는 구 영화법과 영화진흥법(1996년 7월 1일 시행)의 규정은 위헌이다".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역사적인 판결(※ 판결문은 부록 참조)을 내렸다. 10월 31일에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음반 사전심의 또한 위헌(비디오물의 경우는 위헌제청건에 포함되지 않은 탓에 심판대상에서 빠짐. 11월 28일 서울지법 형사합소 1부는 비디오 관련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함)이라는 판결이 이어졌다. 이로써 이땅에서 80여년간 이어져온 영화검열제가 사라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판결은 특히 <파랑새>, <오! 꿈의 나라>, <파업전야>, <오 어머니 당신의 아들>, <달린 교문을 열며>, <상계동 올림픽> 등 사회성 영화의 창작을 통해 온몸으로 영화악법에 저항했던 독립영화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위헌판결은 세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여전히 다양한 영역과 매체에 있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적·사회적·예술적 상황에 일정한 준거를 제공하여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다.²³⁾ 둘째, 행정기관에 의한 삭제심의가 체제비판적이거나 사회비판적인 영화를 철저히 통제해 온 반면, 사전심의의 원칙이어야 할 청소년보호를 위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했다. 셋째, 사회의 건강성이라는 것이 정부나 사회지도층(엘리트집단)의 일방적인 계도에 의해서 확보된다고 믿는 권위주의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이후 일부에서는 현재 판결이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펴면서 "물정 모르는 책상물림들의 순진한 결정이었다"는 도에 지나친 비난을 하기도 했다. 결국 아무 것도 못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영화계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사전심의와 관련한 문제조항(그 실제적인 내용이 검열이라 할 사항)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개정안(정부여당안)이 1997년 3월 17일 국회에서의 표결처리되어 확정된 것이다. 다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결과에 정부여당(개편전의 신한국당)의 입장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영화진흥법 개정과정과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려 한다.

음란물 규제 관행 비판

1970년대 중반까지의 음란물 규제는 주로 도덕적인 관점에 따른 것이었다. 음란물은 무조건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그후 음란물에 관한 논쟁에 몇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고 그 결과 표현물의 성적인 노골성 그 자체에 대한 것 보다 오히려 그 사회적 함의(social content)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생겨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란물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채로, 유형·특성·함의와 무관한 포괄적인 '음란물' 규정이 이뤄졌고, 해악과 영향에 관한 논의 또한 도덕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 왔다.²⁴⁾

우리나라에서의 성표현물에 대한 규제관행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판단기준을 '성표현과정에서 성기가 노출되었는가 아닌가'하는데 두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적인 노골성의 정도만을 가지고 특

정 표현물을 음란과 비음란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규제현실은 양적인 판단이 음란성 여부를 판정하는데 매우 주도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반면 우리 문화에서 상대적으로 폭력의 묘사는 무방비를 넘어서 심지어는 관용적이기까지 하다. 전쟁, 폭력, 살인 등으로 인간을 파괴하고 제거시키는 행위를 매우 멋진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

성표현물에 대한 규제(법적인 규제와 심의를 통한 자율규제)의 근거는 '해악의 문제'가 핵심을 이룬다. 특히 성표현물 규제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음란물'의 규정이 단순한 규범적인 수준을 넘어서 그 해악과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입법체제나 심의체제는 음란성을 '성적 수치심' 또는 '지배적인 성윤리'라는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²⁵⁾

음란물에 대한 현행의 입법적 규제방식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감수해야만 한다. 첫째, '성적 노골성은 곧 음란성'이라는 단순도식은 지지되기 어렵다. 아울러 '음란'이란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자의적인 법적 적용 가능성이 항존하여 법의 안정성을 해친다. 이런 점에서 현행의 법적규제는 모호하고, 자의적이어서 법적 안정성의 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법적 규제와 그 관행은 성적 노골성의 측면에는 지나치게 민감한 반면, 오히려 '강간등 폭력적 표현'이나 '삶에 대해 그릇된 가치나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는 거짓말'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청소년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효과적이며 문제가 있다. 셋째, 인간 존재를 타락시키는 좀더 심각한 표현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성표현물에 쫓점을 두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넷째, 잔인한 음란물과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폭력적이지 않지만 비인간화된 음란물)은 헌법 제2장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나 양성의 평등한 관계 속에서 인간의 성과 사랑, 삶에 관해 사실적으로 묘사한 애정선정물은 '표현의 자유'의 틀 속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애정선정물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기본권(표현의 자유) 보장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음란물의 영향력은 성적이거나 공격적인 자극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음란물이 보는 사람의 상상에 끼치는 영향도 주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대중매체의 각종 자극을 경험하는 것이 정화 효과가 있기 보다는 모방과 학습효과를 일으키고,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기존의 공격적 사고를 활성화 집화시켜 그 뒤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쉽다고 본다. 모델에의 학습이론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바로 업적이 많고 강한 모델을 자주 모방하는데, 잔인한 음란물은 성적 공격자가 성공적인 모델로 등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연구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상상에 대해 검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Tannenbaum(1971년)²⁶⁾은 포르노영화를 세가지로 다르게 편집하여 이와 관련된 조사를 했다. 그가 행한 방법은 조사 대상자들에게 ①포르노 원본, ② 강제추행을 미묘하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이 10월 14일에 발표한 '위헌결정에 즈음한 민변의 견해' 참조
24. 이에 대해서는 다음 두가지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다. 김영환, 이경재, 「음란물의 법적규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김준호, 김은경,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25. 최근의 사례로는 1997년 8월 29일의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의 판결이 있다. 재판부는 전라 또는 반라 상체로 다양한 자세를 취한 여자모델 사진이 수록된 사진첩 <오렌지 길>등을 제조 판매하여 기소된 한이무개(여, 35세)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델의 의상상태나 촬영기법 등으로 인해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기 때문에 음란로 봐야 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겨레 1997. 8. 30. 참조)

26. 김준호, 김은경, 앞의 논문, 43쪽.

게 제거한 검열본, ③ 강제추행이 완전하게 제거된 검열본 등을 보여주고 음란의 노골성과 가시성에 대한 서술을 하게 한 것이다. 그 결과 검열된 영화는 모든 특별히 음란하다고 서술되었고, 특히 세 번째가 그 표출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상상이 실제보다 더 유혹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심의가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의도했던 것의 정반대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찰자들이 자세한 묘사보다는 느슨한 장면들에서 오히려 더 자극을 받고 자신의 상상력을 더 활발하게 발휘하기 때문이다. 즉 제시된 성적 행동양식은 관찰자에 의해서 나름의 상상으로 구축된다.” Ernst와 그 동료들의 실험(1975년)도 그러한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음란물 규제와 관련한 대안

1) 노골적인 성표현물을 성적 노골성이라는 하나의 그릇에 담아 논의할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의 사회적 내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차원에서 구분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그래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기대할 수 있다. 노골적인 성표현물은 세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① 성적으로 폭력적인, 잔인한 음란물, ② 비폭력적이지만 비인간화된 음란물(인간을 동물적인 특성을 지닌 존재로 묘사, 여성의 인간성과 정체성 박탈, 남성의 성적 놀이 대상으로 서술, 여성의 남성성기 숭배 등), ③ 애정선정물. 이것들 중 애정선정물은 '해악적 영향과 관련하여 '음란성'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이 경우도 공공연한 전시·유통은 특별히 '청소년 보호'라는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으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소비는 성인의 자유재량권에 맡길 수도 있다.

2)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유해 성표현물'은 노골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해도 일정한 법적 규제가 요구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성표현물은 노골성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3) '음란물' 규정은 영향력의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의 변화 및 태도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전문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적 증거와 더불어 지역사회 태도검사(community standards test) 등 국민의 의식조사 결과가 함께 참조되고 있다.

4) 성적 노골성에 대한 기계적인 검열은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시키며, 그 효과는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결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상상이 실제보다 더 유혹적일 수 있다. 규제를 위해 행해지는 자의적인 장면삭제나 대사단축 등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5) 주제내용은 '성인용'으로 등급판정된 것임에도, 특정 장면 특히 성적 행위묘사, 지나치게 자극적인 폭력을 기계적으로 제거했다고 해서 '청소년용'으로 둔갑하는 관행은 재고되어야 한다. 표현의 사회적 내용이나 메시지, 혹은 이미지 등의 효과에 대한 내용적인 고려가 없이, 드러나는 성적 노골성만을 제거했다고 해서 그대로 청소년물이 되고 있는 우리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6) 문화와 청소년의 가치표현을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청소년의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식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울러 유해 영상물 규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형법등의 현행법들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영화진흥법이나 음비법 등의 역할은 관리영역에만 한정하여야 한다.

사실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 이 두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영화 심의의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화산업계의 이익확보 문제 역시 영화심의회와 관련하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등급심의제는 '무삭제 등급제'로 창작이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으며, 연령별 체계를 통해 상영을 제한함으로써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영화들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등급심의제는 기획 단계에서 소구 대상을 사전에 선정해야 하므로, 작품의 특성을 한층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등급심의제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한편, 그 영화의 수용가능성을 사회가 책임지는 절충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등급심의제는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폭력, 성묘사, 약물남용, 비속어 등)을 설정하여, 등급판정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비록 등급심의제가 자유를 향한 완전한 대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당한 정치적 검열이나 사전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방지할 수 있다. 등급심의제의 시행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실행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심의제도의 방향

영화에 대한 검열의 전면적인 금지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최소한 선량한 풍속의 보호나 청소년 보호등을 위해 외설적(음란)이거나 폭력적인 영화에 대한 사전규제는 필요하다. 이 경우는 헌법 제2장(제10조등)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사회질서 등을 빙자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등을 억압하기 위한 검열은 철저히 금지되어야 하고 영화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전규제(완전등급제)만을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등급분류의 기준은 명확해야 하고 위법한 검열에 대한 국가배상 등 제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²⁷⁾ 등급분류의 방법, 심의기구 구성과 운영, 보완점 등에 관한 논의는 1988년부터 영화계를 통해 영화진흥법안이라는 형태로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완전등급제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은 다른 절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완전등급제의 실시가 어렵다고 하는 논리²⁸⁾를 소개하고 그에 대해 논박하는 형식으로 하겠다.

"성인영화전용관 법적 허용불가 사유"에 대한 반박

1)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전용관에서 상영케 하는 것이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 위반 사항을 영화진흥법으로 면책케 하는 것"이라는 주장

27. 정재황, 앞의 논문, 222쪽

28. 대표적인 논리로 1) 1996년 11월 11일의 신한국당 주최 '영화진흥법 개정 관련 정책토론회' 자료, 2) 1997년 2월 14일에 기지간담회 형식으로 발표된 문체부의 '성인영화전용관 법적 허용불가 사유' 자료, 3) 1997년 3월 11일자 국회문화체육공보위원회 주최 '영화진흥법 개정 관련 공청회' 진술요지 중 여당측 공술인의 진술 자료 등이 있다.

어떤 영화가 형법등 실정법을 위반 했느냐에 대한 판단은 영화가 공개(상영)된 후에 개인의 문제제기나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기소(상영정지 가처분)된 다음 법원에서 판사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다시 말해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와 어떤 영화가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결정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창작의 주체인 영화계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등급분류(사전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미성년자 보호와 성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때문이다. 물론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 부차적인 이유일 수는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창작의 주체가 마련한 자구책에 불과한 것일 뿐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자율기구는 실정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영화 <사방지>의 선전문이 공윤의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에 따라 음란 판정을 받은 경우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이현세 만화 <천국의 신화>에 대해 검찰이 음란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인 경우가 이를 입증한다. '피해자의 시각'이라는 자막을 넣으면 상영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얘기가 오간 끝에 인권영화제에서 영화를 상영한 것이 문제가 된 <레드 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다. 자율기구는 창작자의 실정법에 대한 이해부족을 보완해주고, 등급분류 이후 어떤 영화의 실정법 위반 판결이 있을 경우 빚어지게 될 업계와 자율기구의 위상 실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권고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그 역할을 한정할 수밖에 없다.

실정법 위반을 영화진흥법이 면책케하기 위해서는 영화에 대한 음란성 판단을 형법·국가보안법 등이 아니라 오직 영화진흥법으로만 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처럼 '포르노그래피의 반포' 등에 관한 판단을 형법에 의해서 하는 것(심의기구의 설치는 다른 법에 의거함)이라면 문체부의 논리는 옳지만, 다른 실정법이 엄연히 작동하는 우리의 경우는 심히 부당한 해석이다. 독일의 심의기구(영화자율심의위원회 : FSK)는 이런 법 체계에 따라 검사와 법학교수 등 5인으로 구성된 '법률위원회'를 두고 성인용 영화에 대해 형법상의 '무협의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또 자율기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제소가 있어야 하는 명예훼손(형사법에 규정)이나 저작권침해는 문체부의 논리대로라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다시 정리하자면 현재의 법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영화진흥법은 다른 실정법으로부터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을 수 없고, 다만 청소년과 성인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자율등급분류를 사회적으로 일정하게 합의하는 것일 뿐이다. 또 자율등급분류기구가 법률 전문가로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에 우선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문체부가 자기식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 추린 것 말고도 많은 법률적 판단이 담겨 있다. 예컨대 "설사 등급심사를 받지 아니한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때에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의 상영금지란 심의의 결과가 아니고 먼저 일괄적인 등급심사를 관철하기 위한 조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는 언급은 어떤가? 실정법에 의한 사후관리 말고도, 무분별한 상영 행위를 막기 위한 민간의 자율적인 규제조치를 지원하는 것이 행정권의 역할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지나친 판단인가? 또 "공론이 비록 그의 심의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된 심의기관이라 할지라도 검열기관인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심의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단지 심의절차와 그 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심의절차에 요구되는 당연한 전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하여 검열절차가 입법의 형태로 계획되고 의도된 이상, 비록 검열기관은 문체부장관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구로 대체했다고 하여 법이 정한 사전심의제도

의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는 판단은 어떤가? 문제는 판결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법에서 사전 허가제도를 채택하고, 법으로 행정권이 심의기구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민간자율에 의한 사전의 권고적 규제와 행정권에 의한 사후 제재로 심의의 원칙을 바꾸는 것이다.

2) 대한민국 실정법 위배 주장

문체부는 "야당의 안처럼 전용관을 두면 18세이상 일정수의 관람인원이 실정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영화를 언제라도 관람할 수 있고, 차후 형법 및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영화로 판정될 시 해당 영화 제작자·극장주·관람자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체부는 스스로 논리의 모순에 빠져 있다. 우선 영화진흥법이 실정법 위반을 면책한다면 형법 등에 대한 위반여부의 판정이 사후에 이뤄질 수 있는가? 또 실정법 위반이 분명한데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아니다. 자율기구가 등급분류 과정에서 '권고조치'를 취하면 사법당국은 그 영화의 일반상영이 이뤄지기 전에 실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상영정지 가처분 등)를 취할 수 있고, 그것은 어쩌면 사법기구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또 사법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화 제작자나 극장은 해당영화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정상적인 상영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설혹 뒤늦게 문제가 돼서 사법적인 판단이 난다고 해도 극장주와 관객이 그 사건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 "검열금지의 원칙은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절차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조치(예컨대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등)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벌 규정(음란, 명예훼손 등)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는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문제는 행정권이 어떤 예단과 통제도를 갖고 영화의 발표여부를 사실상 허가하거나 금지하려 드는데 있지, 실정법 위반 여부가 판가를 나기 전에 광범위한 상영이 이뤄진다고나 그로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은 결코 아니다. 최근에 여러 영화제에 대해 가해진 탄압 사례를 보면 국보법, 음비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등 여러 법률이 동시에 작동한다. 심지어 경찰이 행사를 불허한다는 표현도 보인다.²⁹⁾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문제삼으면 되는 것인데 영화관련법을 동원하여 시간별기를 하거나 국보법의 권위를 수호하려 하는 듯 보이는 일련의 과정은 일부의 주장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전용관은 법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이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기초한 선택사항일 뿐이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6개월 기간의 상영등급 부여 보류'를 규정(법 제 12조)하여 영화의 상영을 사실상 허가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급의영화전용관'은 미성년자 보호와 성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선택하고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 영화계는 이미 오래전에 전용관을 두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를 몇가지로 지적했다. 요약하자면 첫째, 전용

29. "광주 동부경찰서가 인권영화제에서 <레드 헌트>를 상영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는 동아일보 (97.11.12/37면) 정승호 기자의 보도내용 참조 이 기사는 "<레드 헌트>가 제주지역에 이어 광주지역에서도 상영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쓰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최소한의 상식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을 두지 않고 등급외나 등급보류 판정을 하게 되면 실정법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영화의 상영이 사실상 봉쇄되어 헌법이 보장한 학문·예술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둘째, 상영관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유통 관리를 통한 효과적이고 자율적인 규제라는 자율등급분류의 취지를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완전등급분류제

영화에 대한 규제장치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며 또 어느 나라에나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 근본취지에 있어서 영화 창작의 자유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통제인가, 아니면 영화관객(특히 청소년 관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에 따라 전자는 검열로, 후자는 자율적 심의로 나타난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영화업계의 자율규제 형식으로 영화에 대한 등급심의(등급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제도는 창작 표현의 자유, 영화관객의 보호, 영화업계의 경제적 권익이라는 얼핏 모순되어 보이는 삼자를 자율적 등급결정으로 절묘하게 조화시킨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장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5차 개정 영화법에서 검열이라는 단어가 심의로 바뀌었을 뿐 영화검열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일체의 서슬퍼런 민족의식 말살 정책으로 시작된 영화검열은 역대 군사정권의 총애를 거쳐 민주화가 성취되었다고 호언하는 지금까지 버젓이 살아있는 것이다. 영화계는 검열제도를 한국영화의 공적 1호로 규정, 끊임없이 이를 비판하고 검열의 폐지를 줄곧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에 밀려 공진협이 검열 기능에 관객 보호 역할을 보완하려는 외양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는 정부의 영화 통제책으로서의 검열제도의 속성, 검열 주제, 검열 기준, 그간의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한국공연예술진흥협회의 영화검열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신 명실공히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자율적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완전등급심의제도를 운용,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안만이 현행 영화검열을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백을 보완하여, 영화 창작의 자유, 영화 관객보호, 영화업계의 경제적 권리, 관객의 영화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유일한 최선의 대안임을 믿는다. 사실상 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삭제심의의 폐지와 자율적 심의기구를 통한 등급심의제도의 실행은 더 이상 논란을 벌일 필요도 늦출 이유도 없다. 민간 정부가 들어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도 이미 10여년 전부터 선진 민주국가의 선례를 따르고 있지 않는가. 더욱이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도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영화 검열을 폐지하지 않았던가. 일부에서 주장하는 “영화심의 기준의 완화와 관람등급의 세분화”는 사실상의 정부기관에 의해 이뤄지는 삭제제를 전제로 한 현행 심의제도 즉 검열제도의 기본원칙이 바뀌지 않고서는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다. 새로운 대안을 운용하는 데에는 여러 선진 민주국가의 경험과 사례뿐만 아니라, 5.16으로 좌절당한 4.19직후의 영화윤리전국위원회의 활동에서도 배울 바가 적지않을 것이다.

헌법 정신에 비추어본다면 영화심의 자체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완전한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국민정서나 사회 여론으로 보아 심의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절충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심의의 대상을 영리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에만 한정하여, 있을 수 있는 폐해를 예방하고 심의방법도 등급심의에 한정해야 하며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심의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영화에 대한 심의는 현재와 같이 수입심의와 본심의로 이원화될 것이나, 본심의에서의 완전등급심의제를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수입심의의 기준은 현재보다 다소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영화의 등급심의를 담당하는 기구의 구성안으로는 ① 현 영화진흥공사의 기능을 대체할 ‘영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영화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② 방송프로그램(방송위원회등에서 담당)을 제외한 영상물 심의를 담당할 ‘(가칭)영상물심의위원회’를 두는 안 등 두가지 안이 있으며, 영화계는 ①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필자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심의기구의 구성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영화심의위원회는 첫째, 영화 등급심의와 결정에 필요한 영화윤리규정등의 회칙을 제정하고 필요시 이를 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영화윤리규정은 말하자면 등급심의의 기준이 되는 일반원칙과 심의세칙으로 구성될 것이다. 둘째, 영화심의위원회는 이 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영화등급을 심의 토론하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민주적 원칙으로 영화등급을 결정한다. 셋째, 또 다른 영화심의위원회의 직무는 영화에 관한 광고물을 심의하는 것이다. 광고물의 경우, 역시 윤리규정의 광고물 심의 세칙에 근거하여 심의 하되, 광고물의 특성상 미성년자가 보아도 문제가 없는 엄격한 심의관행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론의 심의를 거쳐 배포, 부착되는 영화 광고물을 보면 광고물심의제도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커 보인다.) 마지막은 공동제작(합작) 영화의 국적판별과 관련한 사항이다. 공동제작의 요건에 관한 사항은 문체부 소관사항이지만, 영화의 내용을 평가해서 국적을 판별하는 일은 등급심의과정에서 함께 이뤄져야 하므로 이 또한 영화심의위원회 직무에 속한다. 이상 네가지 직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화심의위원회의 회칙으로 넘겨 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내도록 해야 한다.

영화심의위원회의 등급심의가 영화업계의 경제적 권익을 위협할 정도로 경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여 등급 결정에 대한 재심을 명문화해야 한다. 이 경우 개별업자 또는 창작인이 영화심의위원회를 상대하기는 힘의 한계를 지닐 수 있으므로 영화 관련단체에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내용적인)에 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업자와 창작인이 관객보호가 기본 임자인 영화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방안이다. 결론적으로 중재위원회는 1차 등급 결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놓고 영화심의위원회와 의견 조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재심을 끝내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재심에 따르는 부작용과 영리상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자 한다. 여기서 초심과 재심을 영화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담당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나올 수 있으나, 이는 동 위원회에 초심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재심위원회가 초심위원회에서 결정한 등급을 바꾸기 위해서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등급외 영화와 ‘등급외 영화 전용관’

의설과 폭력의 묘사가 지나친 영화는 엄격히 규제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류의 영화를 전적으로 금지하거나 특정 장면을 삭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영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상영을 제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등급외 영화

의 상영에 대한 제한은 ① 일체의 극장의 광고의 금지 ② 등급의전용관에서만의 상영제도 도입 ③ 등급의 전용관의 허가제 시행 ④ 이상의 규정의 위반 사례에 대한 벌칙 강화 등으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심의제도 혹은 등급외영화에 대한 일반의 오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영화계가 주장하는 등급외영화를 '완전 포르노'와 동일시하거나, 등급외영화 전용관을 '포르노전용관' 혹은 '섹스 샵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는 오해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공식적인 심의등급중에 이른바 X등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포르노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정한 NC-17등급이 있을 따름이다. <소걸>과 같은 NC-17등급의 영화는 정상적인 취급을 받으며 극장협회에 소속된 일부 영화관(제한)에서 상영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포르노는 이른바 '섹스 샵' 혹은 '팝-쇼'가 이뤄지는 별도의 공간에서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당하며 철저히 제한된 관객을 만나고 있을 따름이다. 다시 말해 이들 포르노 영화는 심의의 대상 조차 되지 못하며 별도의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등급외영화는 일반적인 포르노영화와는 엄연히 다르다. 우리의 경우 성행위 묘사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포르노 영화는 수입심의 과정에서 일차로 걸러진다. 그렇다면 등급외영화 전용관은 어떤 것이며 어떤 존재의의를 갖는가? 포르노와는 달리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제한적(예컨대, 성기의 직접적 묘사는 안된다는 제한)으로 묘사하고 있는 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하는 공간이다. 이 전용관은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성인들의 욕구를 일정한 한도내에서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포르노 영화에 대한 규제와 통제의 정당성을 확보해내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새로운 심의제도의 효과

사회단체와 영화단체가 추천하고 인사청문회 등 엄정한 심의과정을 통해 뽑힌 위원들로 구성될 심의기는 우선 정부로부터 명확한 독립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심의기구는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의사를 수렴하긴 하겠지만, 부당한 압력이나 편향된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영화를 심의하게 될 것이다.

<표 > 본심의 통계 (단위 : 편, %)

연도별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심의편수	75	124	107	130	115	104	110	126	174	260	374	389	377	415	412	447	412
수정비율	60.0	67.7	58.9	66.2	59.1	69.2	81.8	81.0	71.8	64.6	51.6	54.2	59.7	51.6	50.7	51.0	44.2

1979년부터 1995년까지 이뤄진 심의에 대한 공론의 분석자료³⁰⁾를 살펴보자. 많을 때는 81.8%의 영화가 수정통과되었다. 정부나 공론측에서 보면 영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수정을 해대는데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심의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고 자르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면 문제는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자르느냐는 주장과, 왜 덜

30. 월간, 『공연윤리』, 1996, 5.

자르느냐는 주장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그 가운데서 공론은 불안한 줄타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강도, 성폭행, 살인 등 반인륜적 사건이 터지면 당장 비판이 제기된다. 영상물이 문제라고 그리고 영화에 대한 가위질이 이어진다. 아주 자연스러운 정권의 교체도 심의의 기준이 흔들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심의를 둘러싼 금품수수 또한 자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의 심의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여러 사회단체가 시청자운동 혹은 관객운동을 펴고 있다. 그러나 그 운동과 영화심의와는 별다른 연계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달라진 심의기구하에서 사회단체는 사후 문제제기라는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방식의 비판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바로 민간자율기구라는 제도하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사전에, 적극적으로도 능동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정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화의 제작과 수입을 후원하는 한차원 높은 관객운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적인 여론조사 방법을 채용³¹⁾하여, 새로운 심의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심의등급의 기준과 그 시행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와 여론수렴 작업을 진행하고 그에 근거해서 가장 합리적인 등급판정의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현행의 영화심의(삭제심의)가 완전등급분류제로 전환했을 때의 효과는 무엇인가? 첫째, 완전등급분류제는 삭제를 전제로 한 현행의 심의방법 보다 민족 정체성의 보호, 미풍양속 함양, 청소년 관객 보호 등의 심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훨씬 유리한 제도이다. 둘째, 완전등급분류제는 현행의 심의방법과는 달리 영화의 완성도를 해치지 않는다. 셋째, 완전등급분류제는 소수 관객의 요구까지도 충족시켜줌으로써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외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하위문화가 불법 유통망을 통해 은밀히 전파되는 것을 일정하게 차단할 수 있다.

위 <표 >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1995년에 본심을 받은 영화중 44.2%가 어떤 형식으로도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심의기간을 1979년부터 1995년까지로 늘려보면 전체 수정비율은 57%에 이른다. 이 수치는 무엇을 말하는가? 공론이 문제 있는 장면을 엄격하게 규제해서 삭제도 하고 단축해주었으니 일반관객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뜻인가? 57%의 영화가 수정처분을 받았다고 하지만 영화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두 장면을 단축한 것 만으로는 영화가 담고 있는 가치관과 주제의식을 바꾸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만큼의 영화가, 그 질의 좋고 나쁨은 논외로 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완성도를 침해당한 셈이 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란이 될지는 모르지만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성인취향의 예로 물등이 존재하는 것은 그것을 찾는 일정한 성인 수요자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엄격한 검열이 시행되고 해도 인간의 본능에 해당하는 문제까지를 철저히 통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자신의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에 대해서는 원하는 것을 보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성인 수요자층의 요구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요구의 일정 한도만을 채워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그것에 노출되는 것을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가 책임을 지고 막으면 될 것이다. 완전등급분류제를 채택하지는 것은 누군가가 내 자식을 지켜줄 것이라는 ‘상호 무책임주의’를 버리고, 행동과 발언이 다른 이중의 가치관을 버리고, 좀더 솔직하게 우리들의 문제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31. “조사대상 부모중 74%가 ‘관람등급’으로부터 매우 유용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미국의 경우 등을 참조할 것.

맺는 말

잠겨 있는 부분까지를 포함하면, 영화관 매출을 기준으로 한국의 영화시장 규모는 3천억원 가량이다. 이 중에서 외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85%내외. 영상소프트웨어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영화관 상영영화가 이런 형편이니 비디오·케이블·공중파방송 쪽의 형편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이다. 외화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 할 스크린쿼터제도 영화가 없으면 멀지 않은 장래에 시문화 될 수밖에 없을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높이지는 논의가 영화제작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영화를 잘 만들면 영화의 질은 높아진다. 그리고 영화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시나리오, 능력있는 감독, 시나리오를 고를 줄 아는 눈과 제작전반을 관리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제작자 등 세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이 세가지만 갖춘다고 해서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바로 '제작편수'라는 또다른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60여편에 불과한 한국영화 편수를 갖고는 영화의 질이 나아진다고 해도 별다른 승산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질을 높이는 일과 편수를 늘리는 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영화제작비 규모다. 미국, 프랑스, 홍콩영화 등에 비교하면 한국영화의 시장은 작은 규모다. 우선은 국내시장만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영화는 영화 제작비나 질에 비해 아주 싼 가격에 수입된다. '복제성'이라는 영화의 특성에서 나오는 '가격차별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을 높이려면 제작비 규모를 키워야 하고, 제작비 규모에는 한계가 있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자본 비주류영화 제작 활성화의 문제다. '대자본을 들인 영화는 주류영화이고 소자본의 영화는 비주류영화'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논의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보면 "한국영화 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조건인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제기가 될 것이다. '다양성'은 또 '높은 질'과 함께 방송이나 영화 등이 표방하는 공익성의 핵심 개념이며 영상 소프트웨어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다양성은 사회구성원의 요구와 필요가 다양화된 사회에서, 특히 대안적인 정치적 이념과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제시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핵심적 개념이다. 다양성을 설정하는 입장은 또 다양한 사상들에 접근할수록 사회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실'에 근거한 입장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상에 기초한 것이다. 언론학에서 개념화한 것을 영화에 도입해보면, 영화의 다양성은 질과 범위와 관련하여 ① 내용의 다양성(의견, 집단, 쟁점, 가치 등의 다양성), ② 유형과 형태의 다양성, ③ 양식의 다양성, ④ 수용자의 다양성, ⑤ 질적인 다양성 등 몇가지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³²⁾ 외화와 무제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1996년의 한국영화 제작편수는 65편, 외화 수입편수는 483편)에서 한국영화가 사는 길은 바로 다양성을 갖추는 것이다. 지금은 대안적 주제와 형식을 갖춘 '독립영화'에 대한 관심이 80년대에 비해 한풀 꺾인 상황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파업전야>를 독립영화의 정점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독립영화, 상업영화를 막론하고 한국영화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금기영역' 파괴 곧 영화검열 문제의 명쾌한 해결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1997. 11. 12)

32. 최양수, 「방송소프트웨어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영상시대의 방송소프트웨어』, 서울: 한울, 1996, 215쪽.

◇ 부록 I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문 (요약)

헌법재판소 결정 (1996년 10월 4일)

사건 93헌가13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91헌바10 영화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

1)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93조146)

제청신청인 강현

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제청관련사건 서울지방법원 92고단7566 영화법위반

2) 청구인 1. 홍기선 2. 유인택

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최일숙

소원관련사건 서울지방법원 89노6866 영화법위반

◇ 판단

가.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의 원칙

1)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검열제가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 없이 실질적으로 앞에서 밝힌 검열의 개념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2) 한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로써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① 먼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은 사전검열만을 의미하므로 개인이 정보와 사상을 발표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미리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발표를 저지하는 것만을 의미하고(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참조),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하여 공개한 뒤에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 26 결정). 그러므로 사후심사나 앞에서 밝힌 검열의 성격을 띠지 아니한 그 외의 사전심사는 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검열의 성격을 띠지 아니한 심사절차의 허용여부는 표현의 자유와 이와 충돌되는 다른 법의 사이의 조화의 문제이므로 헌법상의 기본적제한의 일반적 원칙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상충하는 다른 법익과의 교량과정을 통하여 결정된다할 것이다.

② 검열금지의 원칙은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절차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조치(예컨대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등)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벌규정(음란, 명예훼손 등)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는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검열금지의 원칙은 바로 영화에 대한 사전심사를 모두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영화는 시청자를 표현수단으로 하는 영상매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일단 상영되고 나면 그 자극이나 충격이 매우 강하게 그리고 직접 전달되어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비디오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고, 일단 소비자에게 보급되고 난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마저 없다. 그러므로 영화를 상영 또는 보급하기 이전에 심사·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특히 청소년이 음란, 폭력 등 영화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

심의기관에서 허가절차를 통하여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예컨대,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합할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 설사 등급심사를 받지 아니한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때에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예컨대 새 영화진흥법 시안 제11조 등급심의)에도 검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의 상영금지는 심의의 결과가 아니고 단지 일괄적인 등급심사를 관철하기 위한 조치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나. 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의 위헌성

1) 법은, 영화는 상영전에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12조 제1항),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모든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고(제10조 제2항),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32조 제5호)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3조 제1

항은 영화에 대한 심의기준을 정하고, 심의기관인 공륜이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영화에 대하여는 심의필 결정을 할 수 없으나,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화에 대한 심의제의 내용은 심의기관인 공륜이 영화의 상영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화에 대하여는 상영을 금지할 수 있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그 핵심이므로 이는 명백히 앞서 "가의(1)"에서 밝힌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은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하므로 영화의 심의기관인 공륜이 이에 해당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검열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보아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검열기관의 구성은 입법기술의 문제이므로 정부에게 행정관청이 아닌 독립된 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사실상 검열을 하면서도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은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연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공륜의 위원은 문화체육부장관에 의하여 위촉되고(공연법 제25조의 2,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공륜은 국가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같은 법 제25조의 3 제8항)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륜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륜을 설치토록 하여 행정권이 공륜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륜은 검열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공륜이 비록 그의 심의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된 심의기관이라 할지라도 검열기관인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심의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단지 심의절차와 그 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심의절차에 요구되는 당연한 전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하여 검열절차가 입법의 형태로 계획되고 의도된 이상, 비록 검열기관을 문화체육부장관에서 민간들들로 구성된 공륜으로 대체했다고 하여 법이 정한 사전심의회제의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결론 : 이러한 이유로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제1항에 근거한 공륜에 의한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회에 관한 부분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검열제도라 할 것이므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는 책임회피에 급급하지 말고 제주 4·3 양민학살 당시 정부의 과오를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나서라! -

정부는 4·3 당시 제주도에 내려진 계엄령이 위헌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법제처는 지난 3일 '4·3 계엄령 선포 관련 보도내용 검토보고서'라는 문건을 통해 "45년 11월 2일 공포된 미군정청 법률 제 21호는 모든 일본 법률과 조선의 구정부가 발포해 법률적 효력이 있는 규칙, 명령, 고시, 기타 문서로서 45년 8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것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4·3사태 시의 계엄령은 일제시대의 칙령인 계엄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계엄령이 의결된 날은 1948년 11월 17일이다. 그보다 훨씬 이전인 그해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되고 8월 15일에는 그 헌법에 의거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는 헌법이 제정되고 독립된 정부가 수립된 시점에서 여전히 일제 식민지 시대의 칙령이 유효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권국가로서의 위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군정조차도 45년 10월 9일 공포된 미군정법령 제11호에서 조선인민에게 차별 및 압박을 가하는 모든 정책과 법률의 효력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일제의 계엄령이 조선인민을 억압하기 위한 법령이 분명하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부터 그것의 효력은 이미 폐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과 이치가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삼스럽게 일제의 칙령까지 들먹이며 계엄령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4·3 반세기를 맞아 제주도민과 국민들 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진상규명·명예회복의 요구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서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반세기가 지나고 정권이 수차례 바뀐 지금, 더구나 역사바로세우기의 가치를 내걸었던 문민정부에 와서도 이렇듯 사실은폐와 책임회피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다.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적 청산은 더 이상 늦추어져서는 안된다. 정부는 우선 지금이라도 정부가 보관 중인 당시 자료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번 계엄령 관련 문서의 발굴은 자료의 공개야말로 진상규명의 출발점을 다시 한 번 확인케 해 주었다. 다음으로 정부는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당시 계엄령의 적법성 여부를 포함한 4·3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 국회와 관계 전문가가 참가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합동조사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분쟁을 되풀이 하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규명을 통해 참다운 화해로 나아가려는 것임을 재천명한다.

1997년 4월 4일

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 : 김찬국, 김중배, 강만길, 정운형)

창조적 다양성을 가로막는 영화심의체계

심의방법과 심의기준에 대한 문제제기

(서동진 : 퀴어영화계 집행위원 / 김혜준 : 한국영화연구소 기획실장)

공진협은 또 하나의 공운이다.

1997년 10월 11일부터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가 영화심의를 담당하기 시작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심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기구의 이름만 바뀐 것일 뿐 검열이나 아니냐를 가르는 핵심요소인 심의방법이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996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공연윤리위원회(공윤)에 의한 사전심의를 실은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제"라는 판결이 있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판결로 영화진흥법을 개정해야 했고, 그 결과로 공진협이 생겼으니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검열제도는 '등급보류'라는 조항으로 여전히 남아 있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비디오 관련 조항도 그렇다. 형법·국가보안법·미성년자보호법 등 사후규제 법률이 엄존함에도 영화진흥을 위해 만들었다는 법에서 검열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약 공진협이 영화내용을 문제삼을 경우 그것을 빼거나 고치지 않으면 이른바 '상영등급부여 보류처분(5-6개월간)'을 받고 그 영화는 상영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공진협은 66년에 발족된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예륜)와 76년에 발족된 공운의 검열제도를 고스란히 유지한 채 몇가지 형식적인 것만 변한 것이고, 법을 다시 바꿔 등급보류 조항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또 하나의 검열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 규제 의도

현재의 심의제도(검열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자. 우선 표현의 자유에는 '정치영역'과 '성과 폭력의 영역'이 있고, 자율심의란 청소년과 사회규범의 보호를 위해 '성과 폭력 영역'을 규제하자는 것인데, 현재의 제도는 '정치영역'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강하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란 사상의 다양성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반면 검열제도는 단일한 사상과 일사불란함을 강요한다. 설사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존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화가 발표된 후에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영화(그리고 비디오)검열제도는 다른 실정법 적용에 따른 논란과 저항을 미리 막으면서 국가권력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여당과 일부 지식인층은 검열제도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로 "청소년과 미풍양속의 보호"를 내세운다. 문제있는 영화조차 일단 공개된 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벌어질 악영향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그러나 이 논리는 억지인데, 검열폐지가 모든 형태의 사전심의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상영기회는 주되 연령별 등급을 구분하자는 것인 만큼 영화내용에 대한 파악은 사전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화관련법과는 보호법익이 다른 국가보안법등 실정법(국가적 보호법익인 형법상의 '내란의 죄' 및 '국교에 관한 죄', 개인적 보호법익으로서의 '명예훼손')의 방패막이로 검열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다. 서울경찰청이 4·3제주항쟁을 다룬 비디오물 <레드 헌트>의 상영을 이유로 인권영화제를 탄압하고 급기야 서준식 집행위원장을 체포하면서 들고 나온 논리가 바로 공연법 위반이었고, 제주경찰청은 김동만 연출의 비디오물에 대해 실제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으면서,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 음비법 조항을 활용했다. 결국 일부 보수 지식인층을 포함한 검열옹호론자들의 실제 의도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가 내포되어 있다.

영화를 포함한 '언론·출판의 자유' 곧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행복까지도 탈취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정치영역과 도덕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도덕영역에 해당하는 '성과 폭력'은 자율적인 사전규제(연령별 등급분류)와 법적인 사후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그랬듯이,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열과 관련된 다툼 혹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논란은 내용적으로는 정치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에 집중되어 있는데 검열찬성론자들은 항상 논의의 흐름을 '음란물 규제'쪽으로 바꿔 문제의 본질을 감추곤 한다. 1차 개정 영화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등급분류의 사유(법 제12조제5항, 시행령 제13조의 3,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항의 별표)를 검토해보면 이 점은 분명해 질 것인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외국의 경우 보호법익이 자율심의와 등급분류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일본과 호주의 경우를 별도자료로 덧붙인다.

◇ 시행령 제13조의3 관련 보류기준

1. 국가 또는 국기를 경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
2.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것
3. 폭동·군중학살 등을 묘사하여 공중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신앙이나 중요물 풍자·조롱 또는 증오의 대상으로 하거나 종교의식을 모독하는 것
5. 미신을 정당화하거나 권장하는 것
6.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
7. 준비속의 확대를 정당화하는 것
8. 성범죄등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
9.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한 사람·사실 또는 물건 등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 고증된 바를 왜곡하게 묘사하는 것
10. 허위선전 또는 과장선전이나 타인의 물건을 왜곡하여 소개하는 것
11.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또는 국민의 건전한 정서를 해하는 것
12. 기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규칙 관련 세부기준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방·모략·부정하는 내용을 특별히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묘사하는 것
2. 좌익사상이나 활동을 미화하거나 선전·선동하는 것
3. 준법정신을 해하거나 법정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을 정당화하는 것
4. 정당한 법집행을 조롱·비방하거나 그 집행자를 무능 또는 무력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
5.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우방국가를 특별히 의도적으로 적대시하거나 이를 위한 활동을 미화하여 묘사하는 것
6.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소개함으로써 건전한 교육기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7. 폭행·상해·고문·살해·사형 등의 장면을 지나치게 잔인하게 묘사하는 것
8. 자살행위를 권장할 우려가 있는 것
9. 인체의 특정부분을 노출시키거나 의상·음향·울동 등을 묘사함에 있어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것
10. 변태적인 성행위·강간장면 등을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동물의 특정부위 또는 동작 등을 묘사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11. 연소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또는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
12. 영화의 제명 또는 대사를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으로 묘사하는 것

남성패권주의의 볼모가 된 심의방법

현재의 심의제도는 '성과 폭력'의 유해성을 차단하기 보다 오히려 조장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는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남성패권주의에서 기인한다. 이에 따르면 여성은 종속적인 존재이고 여성의 몸은 남성을 위한 것이다. 본래 영화의 유해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은 인간관계를 호혜평등한 것으로 그리지 않고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그리거나 비인간화(품위저하)하는 표현이다. 성폭력이 그렇고, 인간이 전적으로 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허위의식이 그렇다. 그런데 현재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심을 중심에 두며, 왜곡된 남성다움이 반영된 폭력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지배와 비인간화라는 가치관이 아니라 나체나 성기가 드러나나 아니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성과 폭력'의 영역과 관련하여 흔히 저급하다거나 음란하다는 이유로 일부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보호할만한 가치가 없는 쓰레기"론이 그것이다. 반면 예술이므로 음란하지 않고 그래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예술은 국가권력(정확히 말하면 형법등의 실정법)의 통제 밖에 있다는 주장도 있다. 엇갈리는 이 두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소전제를 간 논증으로 뒷받침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둘 다 문제가 있다. 첫째, 예술작품과 음란물이 객관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판단의 문제다. 그러나 예술과 음란은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 이 둘을 결정하는 문제는 끊임없는 토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는 없고 개인·사회·시대에 따라 그 속성이 항상 변한다. 따라서 어떤 작품이 예술이나 혹은 음란이나가 객관적으로 영원불변하게 결정될 수 있는 듯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 예술작품과 음란물은 서로

배타적인 범주에 속하므로 예술작품은 음란물일 수 없고 동시에 음란물은 예술작품일 수 없다는 생각의 문제다. 그러나 예술과 외술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음란하면서도 예술작품일 수 있다. 셋째, 예술이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 반해 음란물은 그 정반대라는 명제의 문제이다. 그러나 예술과 음란이라는 개념이 평가적으로 긍정적 가치가 있는 것과 부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흔히 사용되지만 분류적인 뜻으로 예술작품은 가치를 자동적으로 의미하지 않고 음란물은 자동적으로 반가치를 뜻하지도 않는다. 넷째, 내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권력의 사후적인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제이다. 그러나 이런 전제는 성립되지 않는다. 검열이 철폐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이다. 하지만 검열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해서 출판·상연·전시·상영 등의 행위에 대한 사후제재가 부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사법적 심사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검열이라 단정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작품의 예술성을 평가하는 것은 독자 혹은 관객이나 평론가의 몫이지만 그것의 음란성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몫이다.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의 기능과 본질상, 법률로써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자유가 절대적인 기본권이거나 무제한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함묵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논의와 자율적인 규제 방식이다. 그런데 우리의 심의체계는 자율기구가 법적인 판단까지를 대신하도록 짜여져 있다. 공진협등의 심의기구가 자율적이며 권고적인 형태의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표의 기회 자체를 중국적으로 봉쇄하는 검열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비디오 중에 보는 사람(특히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다고 보는 것은 "그것을 접했을 때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설은 확실치 않다. '상관성'은 있으나 '인과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영상매체의 내용과 비행(혹은 일탈행동) 사이의 관련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나 비행의 주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비행을 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사회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유해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부차적인 '인과성'도 무시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영화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삶에 대해 그릇된 가치나 태도를 갖게 하는 거짓말 즉 '허위의식'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는 선정성(음란성이라는 유해판단이 이뤄지기 전의 개념)을 보자. 벗은 몸, 심지어 성관계까지도 노골적이라는 것만으로 유해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 성기를 포함한 나체가 보여질 수 있고, 호혜평등한 자발적인 성관계라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문제는 인간의 육체를 상품화하거나 착취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는 것이다. 사람이 오직 성에 의해서만 좌우된다거나,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강간을 당하는 사람(특히 여성)이 그것을 즐긴다고 묘사하는 식으로 말이다.

허위의식을 포함한 유해성을 말할 때는 보통 '음란성'이란 개념을 쓴다. 일반적으로 유해물과 동일시하여 쓰이는 포르노그래피의 경우도 이 '음란성'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그 개념적 완결성을 가질 수 있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어떤 성표현물(sexual representation 또는 sexual expression ;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하여 인간의 '성행동(sexual behavior)'을 일정한 매체를 통해 외부적으로 표출한 것)에 '음란성'이라는 '판단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유해하다는 분명한 '판단의 결과'(음란물 ; obscene material)가 나와야 비로소

유해성을 확증할 수 있고 법적인 규제도 가할 수 있다. 여기서 판단의 기준인 음란물의 영향력(Bandura의 '학습이론'에 의함)은 크게 성적인 측면(성적 노골성), 폭력과 잔인성(성적 공격성), 사회적 규범위반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피는게 보통이다. 이중 단순한 성적인 노골성은 유해적 영향력이 불분명하다고 보는 반면 성적 공격성과 사회적 규범위반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좀더 분명하다고 본다. 영국과 미국의 판례에 따른 음란성(obscenity)의 개념도 마찬가지다. 부패·타락성 기준(Deprave and corrupt test)을 적용한 Hicklin사건(도덕적으로 나쁘고 왜곡시키는 것을 '부패'라 하고, 불건전하고 도덕적인 순수함과 순결성을 파괴하는 것, 선량한 성품을 왜곡시키고 망치게 하는 것, 품위를 떨어뜨리고 모독하는 것을 '타락성'이라 봤으나 정확한 의미피악의 곤란으로 결국 포기됨)과 1973년 '밀러 판결'(Miller test, 미국 : '보충할 만한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을 '중대한 문학적·정치적·예술적·과학적 가치'로 구체화하여 음란물과 예술적인 성표현물을 구별함)을 거쳐 정의된 '음란성'개념은 다음 네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① '현저한 노골성', ② 중심적인 경향이 '호색적인 흥미'를 자아내게 할 것, ③ 그것을 보거나 읽거나 듣는 자가 이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질 것, ④ '보상할 만한 사회적 가치가 전혀 없을 것'(utterly without redeeming social value). 성표현물에는 흔히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에로티카(erotica) 등의 개념이 쓰이는데 이중 성적 공격성이 포함된 잔인한 음란물과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폭력적이지 않지만 비인간화된 음란물)은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로서 헌법 제2장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호간의 평등한 관계 속에서 인간의 성과 사랑, 삶에 관해 사실적으로 묘사한 애정선정물(에로티카)이나 '소프트 코어 포르노그래피'는 '표현의 자유'의 틀 속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애정선정물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기본권(표현의 자유) 보장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미국의 존슨위원회(음란성과 포르노에 대한 대통령위원회 ; 1970년)와 미즈 위원회(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법무장관위원회 ; 1985년), 영국의 윌리엄스위원회(음란성과 영화검열에 관한 내무성위원회 ; 1979년), 캐나다의 프레이저위원회(the Fraser Commission ; 1985년) 등의 활동을 통해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는데 아직은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 존슨위원회는 포르노그래피가 성범죄에 미치는 인과적인 영향을 부정하는 입장이고, 미즈위원회는 폭력적인 포르노그래피와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초점을 맞춰 포르노그래피의 사회적 악영향이 경험적으로 확인된다며 강력한 법적 체계를 권고하였다. 어쨌거나 많은 논의들은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형사정책적 대응은 무엇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동시대 사회공동체 보편적 가치규범 반영의 문제

현재의 심의기준은 주류관객의 가치관 보다는 보수적인 지식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다. 심의기준에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가치규범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흔히 여론조사를 활용한다. 그러나 현재의 기준에는 기성세대의 완고한 선입견이 지나치게 작용한다. 그러다보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예컨대 동성애(특히 게이)영화에 대한 과민반응에는 남성패권주의의 문제와 가치관 반영의 미흡함이 함께 작용한다. 퀴어영화제는 성적 소수자의 불권리를 보장하고 검열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어떤 동성애 묘사가 금지대상 즉 '하드 코어'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처럼 팍팍

하있지는 않지만 외국에서도 동성에 묘사는 일반적인 성표현 보다 좀더 엄격하게 다루지는 것이 보통이다. 근친상간이나 수간처럼 사회규범 이탈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수자의 성적정체성을 정면으로 다룬 동성애영화를 영화제라는 비상업적인 형태를 빌어 상영함으로써, 관련된 논의를 촉발시키면서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의식을 확인해보자는 것이다. 왕가위 감독의 <부에로스 아이레스>에서 보듯이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매우 완강하다. 하지만 그 입장은 사회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관계당국도 보편적 가치규범을 공개적으로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영화제를 봉쇄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할 일이었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죽이는 심의제도

현재의 심의제도는 한국영화 혹은 문화의 저변을 튼튼히 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헐리우드영화가 세계영상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키워야 한다. 막대한 제작비를 들이는 상업영화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이 독립적인 제작방식, 다양한 형태의 상영공간, 동호인과 후원자 모임 등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이런 다양한 노력을 언제라도 불법화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장치 중심으로 되어있다. 독립영화제·인권영화제·퀴어영화제 등에 가해진 사전심의 미필을 이유로 한 탄압, 씨네마테크들에 대한 음비법을 활용한 규제, 심지어 후원금 계좌까지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는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인권영화제의 경우를 보자.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된 대부분의 영화는 상업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판단하면 상영이 어려운 영화들이다. 아울러 현행 심의규정을 따르더라도 전혀 문제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영화검열을 문제삼기 위해 전략적인 도발을 시도했던 것이고 만만치 않은 심의료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예상대로, 아니 예상보다 훨씬 강한 탄압이 있었다. 상영장소를 얻지 못해 학교 휴게실이나 야외를 전전했고, 전기를 끊으면 발전기를 돌려 상영했다. 검문으로 관객을 위협하던 경찰은 급기야 상영공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압수수색의 대상에는 후원금 계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세력이 상시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무기로 삼아 철저한 고사작전을 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다. 앞으로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사전심의의 받지 않겠다는 이유로 구청이 발급한 상영중지명령이나 경찰의 압수수색, 인천 상영에서 벌어진 집행위원 긴급체포 등을 문제삼아 영화관련법의 위헌성을 따질 것이다.

결코 드러나는 것만 갖고 판단하면 일본의 심의체계가 우리와 비슷하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우선 심의를 받고 안받고는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다. 전국 대부분의 영화관을 계열화하고 있는 메이저들이 중심이 된 자율심의의 꼭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이다. 심의를 받지 않는 영화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전용관에서만 상영되는 성인영화가고 둘째는 '자주상영'이라는 비상업적인 유통망을 통해 관객을 만나는 독립영화(자주제작 영화)들이다. 일본 전역에서 열리는 200개 이상의 영화제도 대부분이 자주상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 영역의 공동 대안 모색

대안은 없는가? 우선 정치적 검열을 위해 심의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 등급보류를 없애기 위해 선정성과 폭력성이 강한 영화를 상영할 등급외전용관을 허가제로 운영토록 하고 대신 광고에는 엄격한 제한을 둔다. 합리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남성중심의 시각을 약화시키기 위해 남녀동수로 심의위원을 뽑는다. 주관객층의 대표성을 가진 젊은 층의 참여를 쿼터제로 보장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화제, 씨네마테크 등에 대해 심의예외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제를 통해 보호하기 보다 스스로의 비판능력을 키우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택한다. 강조하건대 심의에 대한 발상의 전환없이는 누적된 문제점을 풀 수 없다.

하드코어까지 모든 표현물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우선은 등급외영화 전용관을 허가하여 제한적으로 '소프트코어'에 해당하는 애정선정물을 상영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노골적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호혜평등한 것이냐 폭력적인 것이냐를 따지는 쪽으로 심의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말의 성기 이식이라는 수간의 요소와 폭력적 성행위를 담은 <옥보단>이나 다큐멘타리의 형식을 빌려 성적인 대상으로 사람을 몰화시키는 <쇼킹 아시아>는 비록 몇장면이 잘렸지만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이 작품의 내용은 수입과정에서 문제되었던 작품, 즉 이들의 애인과의 관계를 그린 <데미지>나 여선생과 제자의 성관계를 소재로 한 <아름다운 청춘>, 동성애를 소재로 다룬 <부에로스 아이레스> 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강간 신화'나 여성의 '지위손상' 등 성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형성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급 포르노그라피'를 공공연하게 표방하면서 광고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선정물을 취급하는 수입업자나 극장주는 등급외영화전용관 설치를 오히려 반대한다. 전용관 설치가 돈벌이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겉다르고 속다른 상업주의 논리와 정부여당의 검열 논리는 절묘하게 만난다. 순진한 학부모들은 문제장면을 과감히 잘라내주는 기관을 믿고 맘 편하게 지낸다. 왜 우리는 말도 안되는 검열을 없애지 못하고 있고, 왜 정부는 음란물에 대한 단속과 성인전용 시설에 대한 관리를 통일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음란물 특별반(Obscenity Task Force)' 설치를 수용하지 못하는가?

<빨간 마후라> 사건으로 광풍이 몰아쳤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드코어 포르노가 공개될 때 최대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은 배우로 출연한 여성인 것이 보통이다. 여성의 신체를 몰화시키고 결국엔 여성을 종속화시키기 때문이다. 남성패권주의가 팽배해 있는 대한민국에서 포르노에 출연한 여배우의 신분이 공개되었을 때 당사자에게 겪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빨간 마후라>에 나온 여학생도 마찬가지다. 그가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출연행위 자체를 처벌받을 이유는 없고 신분이 노출되어야 할 이유는 더 없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한 자(남학생들이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와 그것을 상업적으로 유통시킨 사람들은 형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해야 하지만, 여학생은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이 사건의 사후처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사회에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패권적 남성중심주의'이다. <부에로스 아이레스>의 대학 순회상영 열기가 뜨겁다. 금지해서는 안될 것을 금지했다면 일부러라도 봐야 한다. 그러나 보는 것으로 그치면 검열이 정당하다고 강변하면서 자기

는 남들이 못보는 것을 실컷 구경하는 사람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또 한사람의 권력자가 되고 만다. 검열 기관에 대한 항의, 검열에 맞서는 행사 참여 등 구체적인 행동이 절실하고, 문화예술 전문가 집단은 그런 노력을 조직화해야 한다. (1997. 11. 12)

◇ 부록 III

(일 본) 영 화 윤 리 규 정

소화 34년 8월 10일 개정 실시

평성 6년 5월 1일 개정 실시

영윤유지위원회

(前文)

우리들은, 우리들이 제공하는 영화(비디오영상등을 포함)가 오락으로서, 혹은 예술로서,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을 자각한다.

우리들은, 그러한 자각에 기인하여, 사회의 윤리수준을 저하시킬 영화의 제공을 엄하게 억제할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이 영화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이것을 실시함에 있어서 공정한 관리기관에 의한 자주적인 관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본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들의 노력 뿐만 아니라 널리 영화를 사랑하는 대중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영화자유를 어디까지나 수호하고, 영화의 윤리성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며, 그에 따라 우리들에 부과된 지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염원하는 것이다.

(本文)

본 규정은 흥행장에서 상영되는 영화 및 일반에게 시청될 수 있는 비디오 영상들의 내용, 제명, 예고편 및 선전광고에 대해 적용한다.

1. 일반기준원칙

- (1)일본국 및 헌법을 준수한다. 즉 영화는 제국민과 평화적 협력 기본인권의 존중 및 자유에 기본하여 복지확보를 그 기본적 원칙으로 한다.
- (2)영화를 통해, 사회의 도덕심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관객의 동정을 꾀과 부정으로 유도시켜서는 안된다.

2. 국가 및 사회

- (1)모든 국가의 습관 및 국민감정을 존중한다.
 - 가. 모든 국가의 국기, 애국가 및 그에 준한 것을 취급할 때는 주의한다.
 - 나. 모든 국가의 원수 및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은 고인과 현존을 막론하고 그 취급에 있어서 주의한다.
- (2)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사상을 부정한다. 봉건사상 및 그에 인한 습관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 (3)폭력을 긍정하지 않는다.
- (4)군국주의나 전쟁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 (5) 무력과 폭력에 의한 해결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 (6) 올바른 사회통념을 부정하지 않는다.
- (7) 정당한 직업을 멸시하지 않는다.

3. 법과 정의

(1) 법과 정의의 존재를 엄히 존경한다.

이것을 범하는 자는 지탄한다. 따라서 범죄의 취급에 주의를 기울이며 모방동기를 부여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특히 다음의 사항에 주의한다.

- 가. 살인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또한 잔혹한 살인방법을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 나. 총포, 도검 그외의 무기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폭력행사를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법률로서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무기의 취급에 주의한다.
- 다. 밀수방법을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 라. 마약 및 이에 준하는 약품의 부정거래의 실제 및 사용방법을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 마. 적법하지 않은 주사, 투약, 낙태 등의 표현에 주의한다. 또한 적법한 경우일지라도 잔혹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2) 재판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3)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특히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 가. 특정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 나. 부인, 미성년자의 취급에는 특별히 주의한다.
- 다. 인신매매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 라. 신체장애자, 정신박약자 등의 취급에 주의한다. 특히 이들을 조롱하는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른 인종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 마. 사형, 고문, 린치의 표현은 최소한도로 하며 관객이 잔혹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한다.

4. 종교

(1)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종교를 취급할 때는 경멸, 증오를 가지고 표현하지 않는다.

- 가. 종교의식의 취급은 충분히 주의한다.
- 나. 신사, 불각, 교회당, 분묘, 그 밖에 죽은자와 죽은자의 영혼과 관계있는 것을 취급할 때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2) 목사, 승려, 신관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부당하게 조롱하거나 경멸하지 않는다.

5. 교육

(1) 민주적 교육제도를 존중하고 교육의 존엄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 교육자를 부당하게 우롱하거나 모욕하지 않는다.

- 나. 학적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 특히 중학생, 고교생의 행동묘사는 주의한다.

(2) 미성년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행위의 묘사는 충분히 주의하여 모방동기를 주지 않도록 한다.

- 가. 법률로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나. 위험한 유희, 완구 등의 묘사 및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 은어에 관해서 미성년자의 모방을 부추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가공의 이야기일지라도 과도하게 잔혹기괴한 표현을 사용하여 미성년자에게 공포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다.

6. 성 및 풍속

(1) 성관계의 취급은 결혼 및 가정의 신성함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매춘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3) 색정도착 혹은 변태성욕으로 인한 노골적인 행위를 묘사하지 않는다.

(4) 성위생 및 성병은 인도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필요있는 경우외에는 소재로 하지 않는다.

(5) 성애적 행위 혹은 성적 범죄는 가령 간접적 묘사일지라도 취급에 신중함을 기한다.

특히 다음 사항의 표현에 주의한다.

- 가. 침실묘사, 또는 능욕의 묘사는 관객의 욕정(劣情)을 자극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나. 외설스러운 언어, 동작, 의상, 가요, 음주 등의 표현을 취급하지 않는다. 또한 그 암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취급한다.

(6) 일반적으로 은폐해야만 하는 습관으로 인정되는 사건의 묘사나 관객의 혐오를 사는 조잡한 묘사를 피한다.

특히 다음 사항에는 충분히 주의한다.

- 가. 나체, 착탈의, 신체노출 및 이에 의한 무용
- 나. 전라
- 다. 혼욕
- 라. 성기
- 마. 배설행위

7. 제명

(1) 제명은 본규정의 각조항의 취지에 맞게 충분히 주의한다.

<일반영화제한부(R)의 판정기준의 구체적 척도>에 관해서

일반영화제한부(R)는 일반영화의 범위에 있지만, 영화의 주제, 내용, 혹은 표현, 묘사의 측면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연소자(중학생 이하, 15세 미만)의 관람에 적합치 않은 것으로, 일반영화와 성인영화와의 사이에 위치한 것이다.

일반영화에서의 성표현, 폭력표현등은 주제, 내용과 관련하여 필연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필요한도내에서 간결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영화의 주제, 내용도 여러가지이고, 묘사의 간결도도 다양하므로 연소자에게는 식별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주제, 내용을 이해할 수 없거나 묘사가 쓸데없이 호기심을 부추켜 모방성을 자아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자극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제한부(R)>로 판정한다.

판정은

- ㉠. 표현, 묘사에서 간결화, 억제에 유의한다 (자극도, 호기심)
- ㉡. 주제, 내용의 이해도에 대해 유의한다 (이해도, 모방성)

이 두개항을 골자로 하여 각항의 구체적 척도에 따르지만, 주제, 내용과 표현, 묘사의 양 측면은 나누어서 생각될 수 없으므로 판정에서는 ㉠, ㉡항의 양측면을 종합한 배려, 판정이 필요하다.

일반영화제한부(R)로 판정된 경우, 예고편, 선전물에는 **일반영화판정부(R)**로 표시한다. 신문광고, TV, CF등에는 <중학생이하(15세미만)의 사람은 볼 수 없음>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윤리규정의 <성 및 풍속>에 관한 사항

- A 주제가 성에 관한 것이며 또한 그 내용이 성행위를 불거리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 B 성의 표현에 있어서는 성행위의 과정 (탈착의, 전희, 성교, 후회등)을 연속으로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피하고 간결화한다.

이하 각항의 표현, 묘사에 관해서 구체적 척도를 열거해 보면

- (1) 전라, 반라, 착의를 포함하여 <성행위를 암시하는 표현>
 - ㉠. 전라의 서로 엉킨 풀쇼트는 원칙적으로 피하고, 허리를 포함한 부분의 묘사도 특히 유의한다.
 - ㉡. 반라, 착의 경우도 성교체위의 풀쇼트는 특히 유의한다.
 - ㉢. 상반신의 포옹묘사는 간결화하도록 유의한다.
- (2) 남녀의 흥분된 대사, 효과등을 포함한 묘사
 - . 일반영화에서는 남녀의 흥분된 대사, 효과등은 원칙적으로 피하지만, (R)지정인 경우는 묘사, 표현과의 관련에 있어서 현전히 자극적인 인상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 (3) 凌辱, 輪姦 혹은 성적 고문등, 폭력이 가중된 경우
 - ㉠. (1),(2)의 확인사항에 따르며 흥미본위의 인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도로 간결한 표현, 묘사에 멈춘다.
 - ㉡. 소녀, 심신장애자등의 취급은 특히 유의하고 유아간은 피한다.

- (4) 이상성애의 묘사
 - ㉠. 근친상간의 성행위의 묘사 (대사에 의한 표현도 포함)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묘사를 엄수한다.
 - ㉡. 호모, 레즈비언의 묘사는 암사정도로 멈추고, 간결화에 유의한다.
 - ㉢. S.M 플레이는 원칙으로 피한다.
 - ㉣. 성에묘사에서 배설물 표현은 피한다.
- (5) 성적 유희 혹은 성기에무의 묘사
 - ㉠. 성기에무(자위행위)는 암사정도로 표현하고, 착의상태라도 묘사는 피한다.
 - ㉡. 그 밖의 성적유희는 극명하고 집요한 묘사, 표현은 피한다.
- (6) 성적 기구 이와 유사한 것의 묘사
 - ㉠. 성적 기구의 구체적인 사용묘사는 피한다.
 - ㉡. 춘화, 극화, 출판물의 사진, 낙서등의 성적 묘사에는 특히 유의한다.

2. <법 및 정의>에 관한 사항 (폭력성, 잔혹성의 2개항에 공통한다)

이하 각항의 표현묘사에 대해서 구체적 척도를 열거하면

- (1)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포함하여, 폭력적 행동의 표현에 중점이 놓여지고 묘사의 자극성도 강하여 폭력 부정, 비판의 주제가 회박해질 우려가 있는 것
 - ㉠. 폭력성, 잔혹성의 표현에 있어서 개개의 묘사가 극명하며 되풀이 되어 동일한 묘사가 집요하게 중복되고 그것을 불거리로 강조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한다. 특히 다큐멘터리에 있어서 그 유의가 필요하다.
 - ㉡.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에 있어서 허구, 가공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필요한도의 묘사에 그치고 자극성이 강한 것은 충분히 유의한다.
- (2) 총포, 도검 그 밖의 흉기류가 직접 육체를 손괴하는 구체적 묘사
 - ㉠. 예리한 흉기가 직접 육체를 손괴하는 순간은 원칙으로 피한다.
 - ㉡. 육체에 들어간 흉기로 도려내거나 천천히 찌르는등 고통의 상승효과를 노린 과잉묘사에 유의한다.
- (3) 육체의 손괴상태의 묘사
 - ㉠. 사체의 처리 취급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을 손상시키는 폭력적인 표현묘사는 피한다.
 - ㉡. 특히 안면, 두부, 수족등 육체노출부분의 손괴상태의 직접묘사는 필요한도를 넘지않도록 간결화에 유의한다.
 - ㉢. 인체의 내장노출 묘사(수술의 경우등의 묘사 포함) 등도 간결화에 유의한다.
 - ㉣. 인간이외의 동물의 살상묘사, 사체손괴의 묘사도 이에 준하여 유의한다.
- (4) 잔혹하고 자극적인 살상의 묘사
 - . 극명, 집요한 묘사는 원칙적으로 피하고, 필요한도의 간결화에 그쳐야 한다.
- (5) 고문, 학대, 린치등의 묘사
 - ㉠. 필요한도의 묘사에 그친다.
 - ㉡. 소녀, 심신장애자등의 취급은 특히 유의한다.

3. <교육>에 관한 사항

미성년자, 특히 학적이 있는 중학생, 고교생의 행동에는 유의한다. 따라서 주제, 내용에 비판성이 있더라도 내용이 년소자에게 오해되기 쉽고, 모방을 유인하기 쉽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제한부(R)>로 판정한다. 판정에 있어서는 아래의 각항에 유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한다.

(1) 청소년의 비행(매춘, 불순 이성교류, 위험한 약물 복용, 교내폭력, 이지메, 폭주족, 가정내 폭력, 등 모방을 일으키기 쉬운 행위와 생태)의 표현

가. 약자 혹은 신체장애자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묘사는 모방을 유인하는 일이 없도록 간결, 억제에 유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한다.

나. 교직원, 부모등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묘사는 년소자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동물은 확대하지 않는다.

(2) 청소년이 그 황당무개성, 비현실성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혹은 실록, 수기를 소재로 한 현실적인 내용일지라도 부분의 묘사가 성·폭력·잔혹의 각항에 관련, 과도하게 자극적인 경우는 억제한다.

(번역 : 김소양)

(호주의 심의제도)

1996. 5. 20

영화와 비디오테이프의 등급심의 기준

◇ 서문

1. 등급심의의 의무와 일반원칙

영화와 비디오테이프는 그것이 지방(호주내)에서 만들어진 것이든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이든 상관없이 호주에서 일반에게 판매·대여·상영되기 전에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

등급심의는 등급위원회(Classification Board ; 이하 위원회)에서 관할하며, 시드니에 있는 '영화와 문학 심의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다.

등급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동시대 사회 공동체의 기준을 반영해야 하며, 국가 등급 규약(이하 규약)에서 설정한 기준들을 적용해야 한다.

규약은 등급심에 관한 법률(출판, 영화, 컴퓨터 게임) 1995에 의해 결정된다. 규약은 등급심의의 기준을 이루는 일반적인 원칙들을 담고 있다.

규약은 이렇다.

등급 결정은 가능한 한 다음의 원칙들에 효과를 주어야 한다.

- 1) 성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읽고, 듣고, 볼 수 있어야 한다.
- 2) 미성년자들은 그들을 해롭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3) 모든 사람은 그들에게 모욕을 주는 불필요한 내용에 대한 노출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4) 사회 공동체를 고려할 필요성은 다음과 관련된다.
 - 폭력을 미화하거나 자극하는 묘사 (특히 성폭력)
 - 품위를 손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인물묘사

혼란을 가져다 주거나 해를 끼치게 되는 내용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급이 결정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규약에서 판독되는 품위 손상에 관한 개념은 모든 등급의 범주를 아우르면서 결정하고 적용한다. 품위 손상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본질적으로는 성적인 묘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묘사된 인물이나 사람의 품위를 저하시키거나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해당된다.

규약은 크게 6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진다. G, PG, M은 조인하는 범주이다. MA, R은 법적으로 제한된 범주이며, X는 특수한 범주로 이 역시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규약은 등급심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항(Material)에 대해 기술한다.

지침은 다른 등급 범주들의 내용의 본질을 더 상세히 기술하고, 각각의 범주에 적합한 한계와 범위를 기술한다. 규약과 기준은 심의를 책임지는 연방·주·준주의 장관에 의해 동의받은 것이다.

법적으로, 위원회는 등급을 결정할 때 규약과 지침 모두를 적용해야만 한다. 또한 위원회는 등급에 관한 법 제11조에 포함된 다른 내용들을 참조해야 한다.

제11조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영화의 등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은

- 1) 이성적인 성인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도덕성, 예의범절, 정당성
- 2) 영화의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인 장점
- 3) 의학적, 법적, 과학적 특징들까지 포함한, 영화의 일반적인 특성
- 4) 공표한 혹은 의도한 혹은 공표하려는 사람들이나 계층

2 지침의 내용과 이용

지침은 가능한 한 객관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와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기준들과 장점이라는 개념이 적절히 도모될 수 있는 융통성을 갖는다. (등급에 관한 제11조)

지침의 범주는 연령과 법적 제한에 입각하여 영화에 가장 적합한 관객을 지시한다.

각 등급의 범주는 등급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의해 이용되는 기준들의 목록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은 폭력, 성, 비속어, 성인만의 주제들, 약물 사용, 나체 등 등급구분과 관련한 요소에 관한 것들과 관련있다.

각 요소들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개별 요소들의 영향과 그 영향들의 누적효과를 근거로 등급을 결정한다. 요소들의 내용과 표현방식은 그 영향과 관련있다. 위원회는 분위기, 지속시간, 빈도, 시각적/청각적 상세묘사의 양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분류된 요소들과 그에 대한 설명과의 관계는 영화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 등급이 분류되었다.

등급의 기준들을 결정할 때, 지침은 때때로 여러 방식으로 해석가능한 언어를 사용한다. 지침에서 사용된 단어를 명시하기 위해 용어 풀이를 첨가한다.

3. 소비자에 대한 조언

등급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소비자에 대한 조언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마련하고 결정한다. 법은 포스터, 광고, 비디오 표지 등에 등급의 표식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조언이 보여질 것을 요구한다.

소비자에 대한 조언은 등급에서 포함하는 요소들에 대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것을 마련한다. 소비자에 대한 조언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영화에 대한 정보를 갖고 선택하도록 돕는다.

소비자에 대한 조언은 G등급으로 분류된 내용들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범주는 어떤 연령의 사람이건 관람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조언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4. 등급구분의 지침(Guidelines)

4-1. G (△표시) : 일반적인 등급(General)

(모든 연령에 적합한)

G등급 표시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몇몇 G 영화들은 어린이들의 관심과 별 상관없는 주제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등급의 영화들은 부모들에게 어린이들이 부모의 감독 없이 영화를 안심하고 보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G로 분류된 내용은 어린이들에게 해롭지 않거나 혼란스럽지 않은 것이다. 영화든 아니든, 어린이들을 염두해 두고 만들었든 아니든, 주제나 다른 분류 가능한 요소들에 대한 표현방식이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 ▶ 폭력: 폭력은 매우 신중하게 함축(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 가벼운 정도이거나
 - 위협이나 협박의 정도가 매우 낮아야 하고
 - 빈번하지 않아야 하며
 -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garuitous, 불필요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 성: 성 행위는
 - 시각적으로나 음성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암시되어야만 하며
 - 빈번하지 않고
 -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불필요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 비속어: 비속어는
 - 매우 완곡하고 빈번하지 않아야 하고

-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불필요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4-2 PG (□표시): 부모의 보호

(15세 미만의 사람들을 위해 부모의 보호를 권유)

PG 등급은 부모에게 주의를 요청한다. 이 범주의 내용은 성인의 보호가 없는 어린이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그들을 선동할 우려가 있는 묘사나 언급을 포함한다. 하지만 PG 등급으로 분류된 내용은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혼란을 주어서는 안된다.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를 위해 내용을 먼저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관람할 수도 있다. 또 관람하는 동안 수용가능성의 여부를 충분히 발견할 수도 있고, 관람 후에 그 내용에 대해 토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폭력: 폭력은 신중하게 함축되거나 양식화 될 수 있다. 또한
- 영향이 완곡하거나(가볍거나)
- 세밀하게 보여지지(묘사되지) 않아야 한다.

▶ 성: 성 행위는 암시될 수 있다. 그러나
- 신중하고
- 빈번하지 않고
-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성 행위에 대한 대사사용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 비속어: 비속어는 완곡하거나 빈번하지 않아야 한다.

▶ 성인만의 주제들: 초자연적이거나 완곡한 공포 등의 테마가 포함될 수 있다.
성인만의 주제들을 다루는 방식은 영향에 있어서 신중하고 완곡해야 한다.
더 혼란스런 주제는 PG등급에서 다룰 수 있다.

▶ 약물 사용: 약물 사용에 대해 말이나 언어표현이 신중하고 완곡해야 하며
중요하지 않은 시각적 묘사는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약물사용을 부채질하거나 고무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 나체: 성적 맥락에서 벗어난 나체는 세부적으로 보여질 수 없고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3. M (○ 15+) 분별있는(Mature)

(15세 이상의 분별있는 관객에게 권유)

M 등급은 조연의 차원이지만 법적인 제한은 없다. 그러나 이 범주에서 M이란 15세미만의 사람들에게는 권유할 수 없다.

M으로 분류된 영화들은 잠정적으로 15세미만의 사람들에게 해를 주거나 혼란을 줄 것이라 간주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분류가능한 요소들에 대한 묘사나 지시는 상세한 묘사를 포함한다. 그러나 그 영향은 제한을 요하는 만큼 강해서는 안된다.

▶ 폭력: 일반적으로 폭력의 묘사는
- 많은 양의 상세묘사를 포함하지는 않으며
- 오래 끌어서는 안된다.

사실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볼 때, 폭력의 묘사는 상세함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 빈번하지 않아야 하며
- 높은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고
-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만약 영향을 가중시키지 않는다면, 양식적인 방식에서의 폭력에 대한 묘사는 더 세부적인 것과 더 빈번한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성적 폭력과 관련한 말이나 간접적인 시각적 지시들은 이 조건 하에서만 포함될 수 있다.

- 신중하고 빈번하지 않아야 하며
- 내러티브나 다큐멘터리 맥락에서 강하게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 성: 성적 행위는 신중하게 함축될 수 있다.
성적 맥락에서 나체는 많은 양의 세부를 포함하거나 오래 끌 수 없다.
성행위에 대한 언어묘사는 충격을 증대시키지 않는다면 좀더 상세하게 묘사될 수 있다.

▶ 비속어: 비속어가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다 강한, 상세한, 혹은 매우 공격적인 비속어는
- 빈번하지 않아야 하며
-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성인만의 주제들: 대부분의 주제들이 다루어질 수 있지만, 그 방식은 신중해야 하고 영향은

높지 않아야 한다.

▶ 약물 사용: 약물 사용은 신중하게 보여질 수 있다.
약물 사용은 자극하거나 고무시켜서는 안된다.

▶ 나체: 성적 맥락 외의 나체는 보여질 수 있으나 어떤 세부를 포함한 묘사들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불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어야 한다.

4-4. MA (<15+> 육각형) : 분별있는 사람 동반(15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규제)

MA 범주는 법적으로 규제받는다. 15세미만의 어린이들은 부모나 성인 보호자 없이 MA영화를 볼 수 없으며, 비디오도 대여할 수 없다.

MA 범주는 위원회가 분별있는 관객에게만 적합하다고 간주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것은 개별 요소들의 영향이나 그 요소들의 결합이 15세미만의 관객에게는 해롭거나 혼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폭력: 사실적인 방식은 세부 묘사를 포함하지만 오래 끌어서는 안된다.
영향이 높은 세부적인 묘사는 불필요한 것(타당한 이유가 없는)이어서는 안된다.
양식적인 방식에서 폭력의 묘사는 만약 영향이 가중되지 않는다면 더 세부적이거나 더 빈번할 수 있다.
성적 폭력에 대한 시각적인 암시는 단지 불필요하지 않거나 착취(강제적인)하지 않을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성: 성적 행위가 함축될 수 있다.
성적 맥락에서 나체에 대한 묘사는 세부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착취하는 것 이어서는 안된다.
음성적인 지시(청각적인 묘사)는 만약 영향이 가중되지 않는다면 묘사보다 더 세부적일 수 있다.

비속어: 비속어가 사용될 수 있다.
비속어는 불필요하지만 않는다면 매우 강하고, 공격적이고, 세부적이어도 된다.

성인만의 주제들: 강도 높은 주제를 다루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약물 사용: 약물 사용이 보여질 수 있으나, 자극하거나 부추겨서는 안된다.

고도의 영향을 가진 더 세부적인 묘사는 안된다.

4-5. R (◇표시) 18+ : 제한적인(Restricted)
(18세 이상의 성인에만 제한된)

R 범주는 법적으로 성인에게만 제한되어 있다. 제한된 등급의 내용은 18세미만의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것이다. R로 분류된 내용은 성인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문제들이나 묘사를 포함한다.
등급은 내용의 질에 대한 논평과는 관련없다. 어떤 내용은 성인 공동체 일부에 대해 모욕적일 수 있다.

폭력: 매우 세부적인 묘사가 보여질 수 있다.
불필요하거나 모욕적인 극단적인 폭력이나 사실적인 폭력, 잔인한 묘사는 허용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성적인 폭력은 함축적인 것은 허용되지만 세부적인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묘사는 불필요하거나 (강제)착취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성: 성적 행위는 사실적으로 모방되어 질 수 있다.
일반적인 틀은 모방(홍내)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반면,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육체관계에 있어서는 성기접촉은 포함될 수 없다. 청각적인 묘사는 더 상세한 것일 수 있다.

비속어: R 등급에서 비속어에 대한 실제적인 제한은 없다.

성인만의 주제들: 강도 높은 주제를 다루는 방식은 (강제)착취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약물 사용: 약물 사용이 보여질 수 있지만 불필요하게 자세해서는 안된다.
약물 사용은 자극적이거나 부추기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약물 오용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4-6. X (□ 18+) : 명백한 성적인 내용을 포함
(18세 이상의 성인으로만 제한된 *)
비디오로만 가능함 : ACT와 북부지역에서만 가능

이 범주는 오직 명백하게 성적인 내용만을 포함하는 범주이며, 특별히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실제적인 성교와 완곡한 물신(페티쉬)을 포함해서 성인들간에 동의하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성 행위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를 포함한다. 성폭력에 대한 묘사나 성적인 폭력, 강제, 모욕적인 물신(페티쉬), 관객의 쾌락을 위한 고의적인 품위 손상이나 확대는 이 등급에서 허용될 수 없다.

4-7. RC (Refused Classification)

앞에서와 같이 영화와 비디오는 반드시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인된 심의등급표시와 소비자에 대한 조언이 없는 경우는 심의거부된 경우다.

앞에서 규정한 심의등급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와 비디오는 심의거부된 것이다. 심의거부된 영화와 비디오는 호주내로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

영화와 비디오를 심의거부하는 경우는 세가지 범주로 나뉜다.

- 1) 사려깊은 성인들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기준을 넘어서는 섹스, 약물오용, 범죄, 야만 행위, 혐오스러운 현상
- 2)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 아니든) 성인들이 16세미만의 혹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 3) 범죄와 소요를 부추기는 요소

영화와 비디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심의거부될 수 있다.

- 1) 16세미만인 사람에 대한 성적학대와 다른형태의 공격들
- 2) 다음에 대한 세밀한 묘사
 - 범죄나 소요
 - 금지약물의 사용
 - 짐승같은 야만행위
- 3) 지나치거나 사실적인 범죄행위
- 4) 동의없는 성적범죄
- 5) 공격적인 패티쉬를 동반한 성행위
- 6) 근친상간

◇ 용어 애설

- ▷ 학대(Abuse) : (특히 성적인) 공격이나 학대
- ▷ 성인만의 주제들 : 성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삶의 양상들에 관한 문제들으로써, 소수의 사람들에게 잠정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거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 여기서 성인만의 주제들이란 자살, 범죄, 타락, 부부간의 문제, 정서적인 충격, 약물이나 술에 대한 의존, 죽음, 극심한 고통, 인종과 종교적인 것과 관련한 문제들을 묘사하거나 혹은 말로 하는 것을 포함될 수 있다.
- ▷ 조언하는 : G, PG, M 등급에 해당. 이 등급의 영화들은 영화를 보는 사람이 누구든지 영화를 보거나 이용하는데 법적인 제한은 없다. 이 등급은 나이와 부모의 감독이 필요하며 이 등급에 가장 적합한 관객을 추천한다.

- ▷ 비속어 : G등급에서는 '똥저러' 혹은 '개자식'과 같은 말이 포함될 수 있다. PG 등급에서는 '제기랄'과 같은 말이 포함될 수 있다. M 등급에서는 '엿 먹어'과 같은 말이 포함될 수 있다.
- ▷ 위압(강제/Coercion) : 성행위와 관련한 위압적이고 강제적인 동의
- ▷ 품위손상 : 직간접적인 것을 떠나 본질적으로는 성적인 묘사에 대한 것으로, 묘사된 사람이나 인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포함한다.
- ▷ 묘사 : 재현, 스크린상의 묘사.
- ▷ 세부 : 어떤 주제의 재현과 관련한 음성적인 정보나 시각적인 정보의 양. 세부는 클로즈 업, 반복, 오래 끌어나가는 것, 슬로우 모션, 조명을 통한 강조를 포함할 수 있다.
- ▷ 신중함 : 세부묘사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것, 일반적으로 간결한 것.
- ▷ 혼란/혼란스러운 : 감정적인 충격을 야기시키는 것.
- ▷ 요소들 : 분류가능한 요소들은 폭력, 성, 비속어, 성인만의 주제들, 약물 사용, 나체를 포함한다. 등급위원회는 등급을 결정할 때 이러한 충격들에 대해 사정(査定)한다.
- ▷ 천착하는(타당한 이유가 없는) : 고의적으로 관객의 쾌락을 방해하고 저하시키거나, 도덕성이 결핍되어 있거나, 예술적인 혹은 다른 가치들이 부족해 보이는 것.
- ▷ 물신 : 어떤 대상, 행동, 혹은 성적이지는 않은 신체의 일부분이 성적인 만족을 주는 것. 물신은 완곡한 것에서부터 모욕적인 것까지를 다 포괄한다. 콘돔의 착용은 완곡한 물신의 예가 되겠고, 모욕적인 물신의 예로는 분변기호증(糞便嗜好症)과 같은 혐오스러운 것이 있다.
- ▷ 불필요한 :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내용, 스토리라인이나 예술적인 장점으로 그 정당함을 방어할 수 없는 것.
- ▷ 해/해로운 : 성장시 해를 미치는 요소
- ▷ 영향 : 관객에 대한 효력
- ▷ 함축적인 : 행위나 인물이 실질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추론되거나 내포되어지는 주제들에 대한 묘사
- ▷ 강도 : 방식이나 주제에 대한 힘
- ▷ 내용 : 영화나 비디오의 내용
- ▷ 나체 : 나체란 두 성의 허리 위, 아래의 앞뒷 모습, 혹은 앞모습 전체나 뒷모습 전체, 여성의 가슴 노출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세부는 보여지는 나체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시각적인 밀착이나 시간, 반복, 선명함을 포함해서 다른 요소들로도 결정되어 진다.
- ▷ 모욕적인 :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거나 극단적으로 불쾌함을 주는 내용.
- ▷ 이성적인 성인 : 상식과 개방된 사고를 가진,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공동체의 기준들과 균형 맞출 수 있는 성인.
- ▷ 사실적인 : (방식 참조)
- ▷ 성적인 행동 : 성적인 묘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적인 자극을 부추기는 내용.

- ▷ 성폭력: 희생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적인 공격이나 폭력 행위
- ▷ 성적인 폭력 : (비록 성적인 폭력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여하튼) 성과 폭력이 스토리와 연결된 경우.
- ▷ 명시적인 성 내용 : 스크린 상의 사실적인 성교
- ▷ 모방 : 사실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성 행위의 모방
- ▷ 암시적인 : 어떤 행위나 사물로 주제를 던지시 전달하는 완곡한 방식 혹은 신중한 방식.
- ▷ 암시 : 대개 전체적인 영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분적인 신중한 포커스를 통해 어떤 행위나 사물을 던지시 전달하는 완곡한 방식, 혹은 신중한 방식.
- ▷ 양식적인 : (방식 참조)
- ▷ 분위기 : 슬픔, 유머, 위협, 가벼움, 심각함과 같은 내용과 관련한 질과 느낌.
- ▷ 방식 : (특별히 스타일과 관련한) 영화나 썸의 예술적인 방식.
 사실적인 방식이란, 그 내용이 관객에게 사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하며, 실제 삶과 밀접하거나 진정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
 양식적인 방식이란, 관객이 비사실적인 감을 가지는 것 : 예를 들면 뮤지컬, 공포영화, 애니메이션, 환타지영화
- ▷ 적합하지 않는 : (성장에 있어서 어떤 해를 미칠) 유해의 가능성이나 (정서적인 충격을 야기할) 혼란의 가능성 때문에, 18세이하의 관객에게는 적절하지 않는 내용.
- ▷ 폭력 : 폭력에 대한 행위 뿐 아니라 폭력에 대한 위협이나 결과까지 포함.
- ▷ 시각적 지시 : 폭력, 성, 약물 사용과 같은 분류가능한 요소들과 관련한 이미지. (번역 : 박천미)

